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5.12.09.~2016.12.18.)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소만유치원

지 적 사 항	개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관리 소홀 ○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DB형)액을 감사당 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아 세입세출외현금회계 세입세출내역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함.	주의 2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06.13.~2016.11.04.)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세류유치원

지 적 사 항	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세입세출외현금회계 관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DB형)액을 감사당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함	주의 2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07.11.~2016.07.15.)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역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여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 근무연수산정 및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input type="radio"/> 기간제교사의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하여 NEIS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함	주의 1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08.22.~2016.09.09.)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기관 : 일동유치원

제 적 사 항	계 분	비고
<p>□ 여비 지급 부적정</p> <p>○ 임차 차량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여비를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관내 4시간 이상 출장한 유치원 현장학습 인솔 교사에게 감액 없이 2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사 최은희 외 10명에게 총 250,000원을 과다 지급함.</p>	<p>주의 2명 회수 250,000원</p>	
<p>□ 유치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p> <p>○ 유치원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일동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방(□□고속관광)이 통학버스 운행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체결하고도 임차 통학버스의 유류비 등으로 총 704,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p>	<p>주의 3명 회수 704,000원</p>	
<p>□ 수당지급 부적정</p> <p>○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각종 수당은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규정에 없는 컨설팅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2014 NTT 연수원학교 운영 외부 강사비 6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함.</p>	<p>주의 4명 회수 650,000원</p>	
<p>□ 목적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p> <p>○ 2014년 특근매식비 기준단가는 6,000원이며, 「2014 NTT 연수원학교 운영 계획 (2013.12. □□□□과)」은 NTT 연수원학교 운영 시 급량비를 1식 6,000원 내외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인당 식비를 13,000원~25,000원 등으로 과다하게 집행함</p>	<p>주의 4명</p>	
<p>□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에 관한 사항</p> <p>○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하여야 하나, 2014~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 41건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p>	<p>주의 4명</p>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08.29.~2016.10.1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기관 : 부천두리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세출의 이월 업무처리 부적정 ○ 2014년도·2015년도 학교회계예산 명시이월 처리를 하면서 당해 회계연도 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주의 1명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체 공작물처분계획에 따른 용도폐지 등의 절차 없이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 용도폐지 처리 함	주의 2명	

기관 : 예림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소홀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골절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학생 턱이 골절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음	주의 1명	

□ 기관 : 소화유치원

제 적 사 항	제 분	비고
<p><input type="checkbox"/>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소홀</p> <p>○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골절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학생 손목이 골절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음</p>	주의 1명	

□ 기관 : 소재울유치원

제 적 사 항	제 분	비고
<p><input type="checkbox"/>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p> <p>○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 하면서 임기 개시일인 4월 1일 이전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정 기일을 미준수함.</p>	주의 7명	

공립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10.19.~2016.10.28.)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위례유치원

지 적 사 항	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채용 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 학교장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채용 대상자의 성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 하는데도 기간제교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지 않았음	주의 1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6.11.02.~2016.12.16.)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기관 : 양주덕산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항	처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 ○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3명	

기관 : 송량유치원

지 적 사 항	처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 ○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3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4.24.~2016.07.14.)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기관 : 별가람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계약제 교원 채용관련 선발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 2015학년도~2016학년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채용전형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 3명	
<input type="checkbox"/>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 작업용 피복 목적에 맞게 본인 작업복 및 작업화 등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여성용 티셔츠와 청바지를 구입하였고, 행정실에서는 지출품목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주의 2명 회수 76,200원	
<input type="checkbox"/> 물품구매 절차 부적정 ○ 물품선정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다르게 물품의 구조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에 재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물품의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으로 구매할 수가 없게 되어 일반 물품 구매계약 절차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2명	

□ 기관 : 갈매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 ○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2명	

□ 기관 : 남양주별빛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 ○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2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5.22.~2017.07.1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곡란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휴복직 업무처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육아휴직을 신청·승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인사실무편람에 따라 학기단위로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학기 중에 임의로 휴직을 승인 하는 등 관련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주의 2명	

□ 기관 : 포일성모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소홀 <input type="radio"/>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골절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학생 발목이 골절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음	주의 1명	

□ 기관 : 용호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소홀 <input type="radio"/>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골절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학생 발목이 골절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음	주의 1명	

□ 기관 : 둔전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선발전형 운영 부적정 ○ 2016학년도 기간제교사 신규임용과 재임용 시 전형절차 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면접심사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음	주의 2명	

□ 기관 : 도장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부적정 ○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출산 및 병가대체 등의 사유로 계약제교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용방법, 선발기준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계약제교원 임용후보자 및 재임용자에 대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주의 4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6.07.~2017.07.14.)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해누리유치원

지 적 사 항	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장 휴가처리 부적정 ○ 병가 일수가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 17조에 따라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 초과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제출,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 1명	
<input type="checkbox"/> 입찰 계약 부적정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입찰공고의 기한을 부족하게 부여하거나 가격을 변경 하여 계약함	주의 4명	

□ 기관 : 밝은빛유치원

지 적 사 항	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입찰 계약 부적정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가격을 변경 하여 계약함	주의 2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7.04.~2017.11.09.)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은솔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데도 집행하였거나 전입 교직원 꽃다발을 구입, 축의·부의금품 집행 시 집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주의 2명 50,000원 회수	

□ 기관 : 성남여수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선발전형 운영 부적정 ○ 1차 서류전형(심사)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세부 채점 기준을 미수립하였고, 1차 서류전형에 참가한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2차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확보하는 등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선발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주의 2명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무제 사용 부적정 ○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없게 하여 근태관리를 소홀히 함	주의 2명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신입 교직원 취임식 및 전입교사 환영회 저녁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신입교사 취임식 축하 현수막 및 꽃다발 구입비를 창의적체험활동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총 394,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주의 2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9.08.~2017.12.2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홍도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p><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채용절차 운영 부적정</p> <p>○ 2015~2017학년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채용방법, 채용 일정,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1차 서류전형 평가 시 각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서류전형 항목 중 심사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할 항목이 아닌 정량지표에서 심사자에 따라 점수의 편차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p>	주의 2명	
<p><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예산업무 절차 부적정</p> <p>○ 2015. 6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6. 8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확정하여 집행하였고, 2016. 5차, 7차, 8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실장의 단독결재로 확정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p>	주의 2명	

□ 기관 : 풍산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p><input type="checkbox"/>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p> <p>○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 기준에 한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고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일수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p>	주의 1명	

□ 기관 : 고양동산초병설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 기준에 한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고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일수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 3명 회수 40,730원	

□ 기관 : 고양일산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 ○ 2015회계연도 간주처리 대상이 아닌 학교운영비를 간주 처리하였음.	주의 2명	

□ 기관 : 한내유치원

지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 ○ 2015회계연도 간주처리 대상이 아닌 수익자부담경비를 간주 처리하였음.	주의 2명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9.08.~2017.12.2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 : 한미유치원

지 적 사 항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미신고 ○ 유치원 부지 내 샌드위치판넬 가설건축물(창고)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시설 사용 부적정 ○ 준비실로 인가받은 1층 공간과 EQ학습실, 숙직실로 인가받은 3층 공간에 대해 개인 거주 및 자료실(창고)로 용도 외 목적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 등 납부 부적정 ○ ○○○(원장 남편) 소유의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보전 29,580원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 임의단체의 회비인 연합회비, 비평학회이사회비, 참교육회비를 2014.03.26.부터 2017.06.15.까지 총 18건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보전 11,450,000원	
<input type="checkbox"/> 적립금(만기환급보험료) 운용 부적정 ○ ◆◆유치원에서는 적립형 보험의 만기 환급금을 유치원회계가 아닌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여 환급하고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4회, 총 76,600,000원을 적립금 계좌에서 유치원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다시 적립금 계좌로 환급하는 등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운영함.	경고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의 인건비 지출 부적정 ○ 설립자 ○○○에게 인건비로 2014년 3~6월 총 4회에 걸쳐 2,500,000원을 설립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지출하였고, 2016학년도 근로계약서 내용상 급여를 월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관할청에 교사 임면 보고 및 교사로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2017년 2월 교사 급여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 ○ ◆◆유치원에서는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유치원급식일지 및 식재료 구매·검수서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 냉동고의 온도가 표시되지 않은 저장고를 사용하였으며 적정 분량(1인분, 100g 이상)미만의 보관식을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유통기한이 초과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개봉 날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보관하는 등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input type="checkbox"/> 예·결산 정보공시 부적정 ○ 2016년도 결산서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았고 2017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금액과 다르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함.	주의 1명	

기관 : 예지슬유치원

시 적 사 양	계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 2014.3월~2017.6월까지 총 188,095,0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 하면서 대부분의 공사에서 증빙서류(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정표 등)가 없고 견적서(내역서)에 1식 등으로만 표시하여 내역서의 물량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공사를 실시 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 한 사실이 있으며, ○ 2014.03.19. 공사비 28,000,000원을 설립자(김○○)가 채주 (○○건설)에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설립자 (김○○) 계좌로 지급하고, 2015.12.27. 청구된 공사대금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2016학년도에 분할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징계(감봉) 요구 2명	

시 적 사 항	처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회계운영 기본 원칙 위반(권한이 없는 자의 회계 집행) ○ 2014.3월~2014.12월까지 세입징수와 지출명령의 권한이 없는자인 설립자 김○○가 날인하거나 원장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도장이 아닌 “원장” 이라 표기된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개인용 공공요금 납부 등) ○ ○○○(설립자의 아내)의 개인 공공요금(도시가스요금) 1,477,280원을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정당한 채주(납부자) 계좌로 지출(과오반환)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채주(납부자)에게 현금 지급 (수령증 없음) 등의 이유로 설립자 김○○의 계좌로 지출(과오반환)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거래명세표와 다른 곳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불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보전 1,477,28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지출업무 부적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 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거나 거래사업자의 대표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4.03.03.~2017.06.30.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및 식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 클럽 외 17개 업체에게 총 940,897,725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총액은 273,676,000원을 신고하여 667,221,725원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국세청 통보 667,221,725원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 임의단체의 회비인 연합회비를 2014.03.25.부터 2017.07.12.까지 총 10건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보전 7,220,000원	
<input type="checkbox"/> 적립금(만기환급보험료) 운용 부적정 ○ ○○유치원에서는 1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여 가입하여야 할 종합형 보험(현대해상)에 계약자와 만기 보험수익자를 설립자 ○○○로 하여 5년 만기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적립형 보험(KDB 생명, 감사일 기준 총 납입보험료 90,000,000원)에 가입하여 유치원 회계로 납입하고 이를 관할청에 미보고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보전 90,000,000원	

시 적 사 항	처 분	비 고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제반 업무 부적정 ○ 2014년도~2016년도까지 박○○(설립자의 모친) 외 직원(27명)에 대하여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지급(지급 총액 245,965,396원)하였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반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명 국세청 통보 245,965,396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급여지급 및 급여제공 부적정) ○ 유치원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설립자인 ○○○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관리행정업무 수행을 명목으로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자의 아내 ○○○을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은 ‘유치원 이사’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직원 근로계약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이사 김○○의 급여 지급 시 근로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상이하게 총 13,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4년도~2017년도까지 ○○○(설립자)와 ○○○(설립자의 아내, 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급여신고액을 실제 급여액 보다 174,000,000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며 2014년도~2017년도까지 김○○와 김○○의 급여 지급 시 소득세,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개인부담금 공제 없이 급여총액을 지급하고 개인부담금 71,716,660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음.	경징계(감봉) 요구 2명 보전 84,716,660원 국세청 통보 174,000,000	
<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 ○ 일반 식재료와 분리하지 않고 적정분량(1인분, 100g이상) 미만의 보존식을 보관하였으며, 보존식 기록지가 없거나 담당자, 반입시간 등이 기록되지 않은 보존식 기록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교직원으로부터 매월 급여에서 6만원의 급식비를 공제함에도 급식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해당 교직원 급식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급식지원금에서 교직원 급식비를 포함하여 집행함으로써 원아들의 2017학년도 급식 지원금에서 교직원 급식비(8,880,000원)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1명 보전 8,880,000원	
<input type="checkbox"/> 예·결산 정보공시 부적정 ○ 2016년도 결산서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았고 2017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금액과 다르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함.	주의 1명	

종합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감사기간 : 2017.09.26.~2017.12.14.)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관 : 금촌유치원

시 적 사 양	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계약제 교원 채용관련 선발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2015학년도~2017학년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1차 전형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여 평정요소인 전공/부전공, 학위취득/대학원 수학, 기간제 경력, 연령/근거리, 전임교업무 등에 대한 전형별 채점기준을 마련하지 못함.	주의 2명	

기관 : 가온유치원

시 적 사 양	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연도말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안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된 사실이 있고,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아닌 정리추경의 사유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주의 2명	

기관 : 두일유치원

시 적 사 양	서 분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연도말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안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된 사실이 있고,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아닌 정리추경의 사유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주의 2명	

기관 : 문발유치원

시 적 사 양	서 분	비고

시 적 사 양	개 분	비 고
<p><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 연도말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편성안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 한 사실이 있고,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아닌 정리추경의 사유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거나</p>	주의 2명	

□ 기관 : 한가람유치원

시 적 사 양	서 분	비고
<p>□ 학교회계 연도말 예산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5 ~ 2016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간주처리 예산 편성안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3월 이후에 확정 한 사실이 있고,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아닌 정리추경의 사유로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거나</p>	주의 2명	

2015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기간 : 2015.11.16.~2015.12.18.)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명 : 화성오산 하늘꿈의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390,696,130원]

지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개인명의로 적립형 저축보험 가입 ○ 2013.04.04.부터 월 8,299,200원을 12년납 만기로 가입 총 277,200,000원 저축보험을 설립자 명의로 납부 [주피보험자 : 설립자 ○○○]	경징계 원장 1명 보전 333,696,130원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에서 개인(설립자) 종합부동산세 56,496,130원을 납부(2009년분 : 16,287,370원, 2010년분 : 17,930,800원, 2011년분 : 22,277,960원)		
<input type="checkbox"/> 폐업업체로부터 식재료 구매 ○ 2014학년도 유치원 급식운영을 위하여 일반과세자(□□상회)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간이영수증만 징구하여 지출처리(59건, 78,114,500원) ○ □□상회(급식납품업체)는 2014.12.31.자로 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식자재 구입(21건, 19,913,500원)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 2015.01.29.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동 유치원 통학버스(경기76아△△△△)에 대하여 신고 없이 운영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미신고 ○ 유치원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신고 없이 사용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각종 시설공사 과다집행 ○ 2015.12.23. 유치원 시설보수공사(설비, 조경, 미장방수, 내부인테리어)를 (주)○○물류와 1억1천만 원에 계약하여 공사하였으나, 동 회사는 물류보관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유치원 시설보수공사 시 일부 공사비 과다 지출	경고 원장 1명 보전 57,000,000원	

□ 기관명 : 수원 수원여자대학부속유치원 [퇴직(조치불요) / 보전조치 : 585,460,594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하위로 시설공사 대금 집행 등 ○ 2015.01.27. 시설수리비로 4억5천만 원을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출하고, 2014년도 결산서에도 지출로 보고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지출이 아닌 적립금 명목으로 별도의 통장에 각각 1억5천만 원, 3억 원을 분산 예치하여 보관	경징계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45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이용료 타 계좌로 적립 ○ 사유재산공적사용료로 2015.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천5백만 원을 9개월간 타 계좌로 적립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135,460,594원	

기관명 : 수원 매탄리라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20,000,0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현장학습업체와 계약 체결 ○ 2014.04. ~ 2015.10.까지(총 20회, 79,143,000원) □□□□ 아동 숲 원예치료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숲체험 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이 업체는 등록이 안 된 업체이며, 숲 원예치료연구소 ○○○은 2014년 ■■■■와 거래하며 부가가치세(2,220,8509원), 지방소득세(81,160원), 개인소득누락 (811,616원) 등 관련 세금을 미납특정감사 중 총 3,113,620원을 납부 완료(2015. 12. 22.)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사용료 지출 ○ 사유재산공적사용료로 2015. 5.~10.까지 총 5회 (월 4백만 원) 타 계좌로 적립	경고 원장 1명 보전 2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관리부장직위로 급여를 받고도 근로소득세 등 미납 ○ 원장(□□□)은 남편 ○○○를 관리부장으로 임용하고(2013.03.01. ~ 2022.03.01., 10년간), 평일(화~금) 오전8시~12시까지 근무조건으로 매월 8백만 원(기본금 680만원, 직책수당 100만원, 시간외수당 20만원)씩 2014.11월 ~ 2015.10월말까지 총 69,681,93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주의 원장 1명	

기관명 : 부천 사랑아트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40,648,46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의 부친을 채용하고 급여는 원자의 여동생에게 입금 처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 □□□(원장 ○○○의 남편)의 부친 ■■■을 관리직원으로 임용(임용일 2009.04.07.)하여 2014년3월~2015년3월까지 매월 150만원, 2015년4월부터 매월 200만원을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상 꾸며 놓았으나 실제로는 원장 ○○○의 여동생 ‘●●●’에게 송금함 ○ ▲▲▲(원장의 동서)를 보육교사로 근로계약(2015년 8월 10일자)하고 8월 인건비 144만원과 9월 인건비 179만원을 세금공제없이 국민은행 ‘△△△’ (▲▲▲의 자)에게 송금. ▲▲▲의 주소는 설립자 부친의 주소(중동 △△△-3 3층/유치원 옆 건물, 원장 ○○○ 소유)와 동일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교구교재비 허위부당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 업체 대표)에게 송금한 2,493,000원(’ 14.5.29. 36만원 / 06.30. 36만원 / 07.31. 36만원 / 08.29. 35.1만원 / 09.30. 36만원 / 10.31. 36만원 /12.31. 34.2만원)이 실제로는 원장 ■■■의 동생 ●●●(하나은행)에게 송금한 것임. ○ 2014.09.23. △△기획(이벤트회사) 입금내역 230만원의 실제 계좌주는 ●●●으로 확인됨. ○ 2014.08.04. ‘프린터기’ 거래내역 35만원의 실제 계좌주는 ●●●으로 확인됨.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의 개인아파트 관리비 및 차량수리비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3.28. 512,530원, ’ 14.4.30. 388,880원, ’ 14.7.25. 209,880원, ’ 14.8.26. 205,420원, ’ 14.10.26 215,810원, ’ 14.11.26. 204,260원 등 총 1,736,780원을 설립자(원장)가 거주하는 아파트(△△△△△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 2015.03.09. ▲▲문구 812,680원 간이영수증 첨부하고 계좌이체한 예금 계좌주는 ‘○○○○모터스’ (●●●한국회사)로 설립자 차량 수리비임을 확인 	경징계 원장 1명 보전 2,549,460원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가 개인카드(현금)로 물품구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학년도~2015학년도 물품·용역 등의 대가지급 시 법인카드가 아닌 설립자 및 원장의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입 집행하고 정당채주가 아닌 설립자 및 원장 개인 계좌로 2014년 228건 64,588,460원, 2015년 110건 20,012,618원 등 총 338건 84,601,078원을 입금. 	경징계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잔고부족으로 차입한 후 차입금보다 많이 입금 처리 <input type="checkbox"/> 설립자와 원장이 수시로 유치원회계 잔고 부족을 이유로 차입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상환한다는 이유로 차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함.	경징계 원장 1명 보전 6,999,000원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사용료 지출 <input type="checkbox"/>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유재산공적사용료 명목으로 2015년 3회(5.18,7.28,10.13)에 걸쳐 총 31,100,000원을 설립자 ○○○에게 송금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31,100,000원	

기관명 : 고양 유진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25,000,00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된 설립자 소유의 현장학습장 이용 <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활동 시 ○○시 소재 □□□□□생활관(설립자 소유)을 사용하면서 현장학습비 36,745,000원(9건)을 거래명세표만 받고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원장 소유의 주차장 부지의 임대소득 탈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통학차량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주차장임대 목적으로 ○○유치원에 인접한 설립자 소유의 토지 473.3㎡(2필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6번지)를 임대차계약하고 매월 임차료로 3,850,000원을 지급하여, 총 46,200,000원을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어린이통학버스 매각대금 세입 미조치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은 2015.5.2.일 통학차량 76저△△△△을 동일 설립자(○○○)가 운영 중인 ‘■■유치원’에 매각하며 매각대금 25,000,000원을 세입 미조치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25,000,000원	

기관명 : 광주 태전한솔유치원 [정직2월(병합) / 보전조치 : 408,223,032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유치원회계에서 대납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부족분(5,250,000원)을 □□시 사립유치원 총무에게 송금하여 부당 집행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5,250,000원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에게 월정액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설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정액 2,5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	경고 원장 1명 보전 40,956,000원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당 집행 ○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 시설인 숲체험 공사비 9,07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	경징계 원장 1명 보전 9,070,00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이전비용(대출금) 이자 부당 집행 ○ 설립자 ○○○는 2009년에 유치원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5. 29. 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승인받고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8백만원씩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2013년에는 개인의 대출금 5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억원의 대출금 이자명목으로 2012.3.29.부터 2015. 10.20.까지 유치원회계에서 352,227,462원 부당하게 집행함	중징계 원장 1명 보전 352,227,462원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건물에 대한 부과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집행 ○ 설립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719,5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행정착오라고 주장) 집행	주의 원장 1명 보전 719,570원	

기관명 : 용인 수지자연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34,300,000원]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당 집행 ○ 2014년 설립자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옆 개인부지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28,300,000원)를 집행함	경징계 원장 1명 보전 34,300,000원	
<input type="checkbox"/> 개인토지의 사적시설에 공사비 부당 집행 ○ 2014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토지에 주차장 공사비(6,000,000원)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함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상반기 감사기간 : 2016.04.04.~2016.07.15.)

하반기 감사기간 : 2016.10.~2016.1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명 : 구리남양주 예은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01,154,700원]

지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없이 급식비 지출 ○ 2014년도 급식비 지출내역(3,712,586원)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만 비치하고 입금내역 등 회계관련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수감기간 동안 수익자부담경비 총 미납액이 125,498,850원(2014년 83,262,750원, 2015년 42,236,1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자 관리를 소홀히 함.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 부적정 ○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유치원회계가 아닌 계좌로 76,502,7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76,502,700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 2014. 1.부터 2015. 4.까지 설립자 ○○○와 행정직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축소 또는 미신고하여 총 2년간의 근로소득 53,369,14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퇴직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생명 외 2개 업체에 보험기간이 2012. 11.부터 2022. 11.까지, 2012. 11.부터 2017. 11.까지인 10년/5년납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적립하는 등 총 400,008,28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인가시설 외 교육용 시용 및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 ○ 유치원의 교육용 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토지를 평소 원아들의 현장학습시설로 사용하면서 상기 토지에 농장창고를 설치하고 농장관리인을 채용하는 등 유치원회계에서 29건 총24,652,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4,652,000원	

□ 기관명 : 구리남양주 서울유치원 [정직3월(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207,645,000원]

제 목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생명에 보험기간이 2014.8.부터 2029.8월까지, 2015.10.부터 2030.10.까지 인 15년 납의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총 19,80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허위서류 작성하여 설립자의 부친 등에게 입금 ○ 2013년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시설 및 교구 확보 기준액 충족을 위해 설립자가 인가 전 실시한 시설공사 및 교재교구 구입비를 2014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시설공사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허위지출서류를 작성하여 2014. 5. 8.부터 2015.2.26.까지 15회에 걸쳐 총 199,245,000원을 설립자 □□□의 부친 등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원장 소유의 차량(스타렉스 76조 ○○○○)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견학버스 대절비 등으로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여 2014.10.24.부터 2014.12.24.까지 4회에 걸쳐 총 8,400,000원을 설립자 □□□의 장인 ■■■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음.	정직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207,645,000원	

□ 기관명 : 구리남양주 푸른숲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 16,687,650원]

제 목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 타기관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16,687,650원을 부당 수령.	경고 원장 1명 회수 16,687,650원	

□ 기관명 : 구리남양주 첫단추유치원 [경고 / 회수조치 : 9,254,990원]

제 목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 타기관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9,254,990원을 부당 수령.	경고 원장 1명 회수 9,254,990원	

□ 기관명 : 안성 반디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6,987,300원]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p> <p>○ 2014 ~ 2015학년도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입·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상이하며, 또한 2014학년도 불용액이 9,123,449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p>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p> <p>○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학부모에게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지출함.</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p> <p>○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 및 식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53건, 4,229,900원을 집행하였고, 본인 차량 주유 및 차량정비 등 개인용도 사용 31건, 2,757,400원을 집행하여 총 84건, 6,987,300원을 부당 집행함.</p>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6,987,300원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p> <p>○ 2014년 9월 유치원 리모델링(외벽보수, 도색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 (계약금액 : 23,000,000원, (주)□□빌○○○외1명)을 체결하면서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과세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지세,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미징구함.</p>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 기관명 : 안성 사관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9,895,000원]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 고
---------	---------	-----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 원장 □□□의 대학교 등록금(경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을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비라는 이유로 유치원회계에서 2,695,000원을 부당 집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에게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을 추가로 계 7,2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9,895,000원	

기관명 : 안성 파랑새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1,130,6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 2014년 유아 196명, 2015년 유아 194명으로 모두 100명 이상임에도,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총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9~11명)와 맞지 않게 운영함.	주의 원장 2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입·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상이함.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학부모에게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수익자 부담경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지출함.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고, 세출 예산에 편성된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인지에 대한 결정과 정당 지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품의요구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일부 회계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집행함.	경고 원장 2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부당집행 및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 2014~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설립자 개인적인 유흥비(골프, 온천 등), 식사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17건, 1,130,600원을 유	경고 원장 2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1,130,600원	

<p>지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부당 집행 내역 중 2014.4.28. 골프장 등 5건은 설립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음</p>		
--	--	--

□ 기관명 : 안성 늘푸른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회수조치 : 10,693,32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 타기관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16,687,650원을 부당 수령.</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회수 10,693,320원</p>	

□ 기관명 : 안양과천 삼호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39,848,52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학년도 11명, 2015학년도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p>	<p>주의 원장 1명</p>	
<p>□ 수익자부담경비 일부 유치원회계에 미편입 ○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기업은행 원아별 가상계좌로 수납한 후 일부 금액만 유치원회계 통장에 편입하고 총 39,848,521원을 유치원회계 통장에 미편입함.</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39,848,521원</p>	
<p>□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총 11,900,000원 상이함.</p>	<p>경고 원장 1명</p>	
<p>□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학부모에게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지출함.</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 원장 □□□과 급식총괄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축소 또는 미신고하여 총2년간의 근로소득 137,084,200원을 과소 보고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719,57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 2014 ~ 2015학년도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지입 차량과 계약(2014학년도 2대, 2015학년도 2대)하여 편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차량 실소유주에게 월 임차료를 지급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719,570원	

기관명 : 안양과천 중원유치원 [감봉3월 / 보전조치 : 16,347,29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 2015학년도에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및 이중지출 ○ 설립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2014년 3,986,300원, 2015년 3,966,740원, 총 7,953,040원과 이체수수료 1,000원, 각 500원씩 총 1,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여 납부하였고, ○ 2014년 5월 3일에 스승의날 교사 선물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를 340,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2014년 5월 7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34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이중 지출하여 원장 □□□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총 8,294,040원을 부당하게 집행.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8,294,040원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 유치원의 텃밭 및 시설관리 업무를 위하여 □□□을 관리인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업무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일부(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누락하였고, ○ □□□의 개인 사정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 아닌 유치원 명의의 통장으로 2014~2015 회계년도에 □□□의 급여 23,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 급식 물품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이 체크카드(급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여 수령하는 유치원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이후 유치원회계에서 □□의 급여 수령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66건, 3,905,235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p>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p> <p>○ 2015년도 학기초 2층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금청구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만 수취하였고 실제수취인과 지출장부상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상대자가 상이하여 정당한 채주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 또는 청구하지 않음.</p> <p>○ 2016년 유치원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과세자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승낙사항을 비치하지 않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시 시방서, 공사세부내역서, 도면, 공사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변경 인가 없이 시설확장공사비 집행</p> <p>○ 교육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2015년 2월 확장공사를 하여 2015년 3월부터 취침실(낮잠실)을 교실로 사용하고 조리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 무단 변경 사용하여 교육지원청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일부만 원상복구하고 조리실, 교사협의실은 변경인가신청 예정 중에 있으며, 무단 변경과정에서 시행된 총공사비 4,282,5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함.</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4,282,500원</p>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복무관리 및 국외체류기간 중 보수지급 부적정</p> <p>○ 2014년 행정직원(□□□)이 감독권자의 허가없이 개인용으로 출국하였는데도 국외 체류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되는 보수 3,770,756원을 부당 지급함</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3,770,756원</p>	

기관명 : 안양과천 햇빛유치원 [해임 / 보전조치 : 142,225,0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p> <p>○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학년도 11명, 2015학년도 1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주의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 ○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원장 소유의 개인통장에 입금되도록 한 후 일부금액만 유치원회계 통장에 입금 처리하여 132,685,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현금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 5,026,000원도 유치원회계 통장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유치원회계 미편입금 총 137,711,000원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수입 업무를 부적정 처리함.	정직3월 원장 1명 보전 137,711,000원	
<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상이함.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2014,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지출하였고, ○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중 방과후교육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업료와 같이 징수 및 수납 처리하여 목별 수입액 및 지출액 확인이 불가능함.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현금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 후 개인계좌로 입금 등 ○ 2014,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유치원 법인카드나 정당채주 통장이체 등으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사용 후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105건, 24,819,21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 원장 □□□은 출장 관련한 근거 서류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본인 소유차량에 주유를 하여 총 41건, 3,554,013원을 유치원회계로 집행하였고, 유치원 건물 관리인 ○○○에게도 출장 관련한 근거 서류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개인차량을 수리를 하여 총 4건, 96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부적정하게 지출함.	경고 원장 1명 보전 4,514,013원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 2014학년도 유치원 놀이터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시 증빙서류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를 구비하지 않았고, 놀이터 철거비용으로 2,800,000원이 지급되었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어 폐기물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기관명 : 안양과천 은빛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회수조치 : 9,270,3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input type="radio"/> 타기관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9,270,310원을 부당 수령.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회수 9,270,310원	

□ 기관명 : 동두천양주 아름솔유치원 [감봉3월(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64,913,4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input type="radio"/>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교원이 아닌 설립자(행정직)를 교원위원회에 포함하여 2014학년도(유아 수 96명)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4명, 총 6명으로 구성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유아 수가 110명임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5명, 총 7명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9~11명보다 적게 구성함.	주의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유치원회계에 미편입 및 수입처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기업은행 원아별 가상계좌로 수납한 후 일부 금액만 유치원회계 통장에 편입하고 총 24,600,000원을 유치원회계 통장에 미편입함. <input type="radio"/> 원아별 가상계좌로 수납 한 수익자부담경비를 당일이 아닌 매월불특정일에 유치원회계로 수입 처리하였고, 2014년 3월에 현금 수납한 입학금(5,000,000원, 100,000원 × 50명)을 즉시 유치원 회계 통장에 예입하지 않고 2014. 5. 30.에 입금 처리함.	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24,600,000원	
<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서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266,920천원 상이함.</p>		
<p>□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 ○ 수익자부담경비 중 2014 및 2015학년도 방과후과정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방과후교육과정비에 포함하여 지출하여 지출액 확인이 불가능함.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 설립자 및 설립자의 자녀 퇴직금 적립 보험료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 및 설립자의 자녀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할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적립의 사유로 4건의 삼성화재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여 2014년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 37,353,472원을 납부함.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37,353,470원</p>	
<p>□ 현금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 후 개인계좌로 입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법인카드나 통장이체 등으로 하지 않고, 설립자 및 교직원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후 설립자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317건, 338,370,22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 업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교사 퇴근, 물품 구입, 원아 병원이동 등을 위해 설립자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고 출장 관련한 근거 서류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2,959,939원을 유치원회계로 집행함.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2,959,930원</p>	
<p>□ 근로계약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조리사를 고용하는 계약(월급여1,300,000원)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조리사 계약서에 수기로 차량운전원 - 업무를 부기하여 월급여 1,000,000원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여 2,300,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서상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운전원 2명의 인건비에 대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로 지급함. ○ 2005년 폐업 신고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5.4.29. 공사 완료 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 2014~2015 회계연도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입금하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거나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만을 징구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대금을 지급함.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및 창고공사 외 2건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함.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기관명 : 동두천양주 예일유치원 [경고]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6명,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중 2014 및 2015학년도 방과후과정반비와 2015학년도 특기적성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업료와 같이 징수 및 수납 처리하여 수입액 또는 지출액 확인이 불가능함.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동두천양주 흙그루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3,800,00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2015학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5명,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1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11명을 초과하여 구성함.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input type="checkbox"/> 2015년 “유치원 방수 및 도장공사” 외 5건의 계약을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주)□□□□(대표: ○○○)과 총 94,616,000원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세부내역, 전·중·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복무관리 부적정</p> <p>○ 유치원 원장은 2015. 12. 15.~ 2015. 12. 18.(04일간) 일본 □□□ 숲유치원을 방문하는 구체적인 계획 등 관련 서류가 없이 대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75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복무규정에 의거 출장 시 근무상황부에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출장신청(승인) 등 없이 일본을 다녀옴.</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p> <p>○ 2014~2015년까지 □□□(○○교육 대표)과 영어특별활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한 □□□의 계산서가 아닌 ■■■(●●● 교육 대표)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치하고 대금은 □□□의 계좌로 총 108,055,000원을 입금하는 등 영어특별활동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계획서, 견적서, 영수증 등)가 없이 대금을 지급함.</p> <p>○ 교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현대화재보험에 월 20만원씩 2015.8.20일까지 납입을 하고 있다가 감사당일 이를 지적하자 유치원회계로 3,962,147원을 납입함.</p> <p>○ 유치원 인근 건축물 발코니를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건물 소유주가 검찰청에 신고하여 △△시청에서 1,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2014. 4. 11.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함.</p>	경고 원장 1명 보전 1,000,000원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임금 지급 부적정</p> <p>○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근로자 2명의 임금산정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2,600,000원이 아닌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800,000원(100,000원 × 14개월 × 2명)을 과소지급 하였고,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월 200,000원씩 책정하여 총 5,600,000원(200,000원 × 14개월 × 2명)을 지급함으로써, 총 2,800,000원(1,400,000원 × 2명)을 과다지급 함.</p>	경고 원장 1명 보전 2,800,000원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p> <p>○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CMS와 현금으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회계 통장에 즉시 입금 처리하지 않고 불특정일에 입금 처리하여 장부금액과 통장금액이 불일치함.		

□ 기관명 : 성남 뽀뽀뽀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90,928,52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 2014학년도 유아 수 151명, 2015학년도 유아 수 132명으로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9명 이상 11명 이하로 정하여야 함에도,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총 5명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정한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 세출액의 목별 금액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과소 지출함.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겸 원장 영리업무 종사 ○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은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같은 건물 3,4층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 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2009.9.17. ~ 2015.4.1.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영리업체인 ▲▲▲▲▲(주) 대표자로 겸직 근무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 원장은 (주)□□□□□□이라는 업체(종목:교육서비스,교재교구,인력공급업)를 설립하여 유치원에 독서, 미술,요리,공작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여 2014~2015년 기간 동안 ㉠총 82,069,600원을 지급하였음. ○ 또한, 2014~2015년 기간 동안 (주)□□□□□□ 소속	경고 원장 1명 보전 88,069,6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직원 ○○○에 대해 종일반보조교사 인건비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총14,593,610원을 지급하였음.</p> <p>○ 2014.4.2.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대표 ○○○), 공급 받는 자는 □□□□□□(대표 ○○○)임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ㄹ6,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및 회계관리 부적정</p> <p>○ 2014,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58,920원을 개인용도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녀의 업무추진 명목으로 개인사용(애견물품, 의류구입 등)을 하도록 용인하였고 지출 중 일부건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등 지출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858,920원</p>	

기관명 : 성남 한국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2,000,0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p> <p>○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학년도 15명, 2015학년도 22명으로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5회 개최(2014학년도 2회, 2015학년도 3회)하였으나, 회의록은 1회만 작성하였음.</p>	<p>주의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 세출액의 목별 금액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p> <p>○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과소 지출함.</p> <p>○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와 현금으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회계 통장에 즉시 입금 처리하지 않고 불특정일에 일괄 입금하여 처리함</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 부적정 ○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을 임의 편성하고 사유재산공적이용료(2015.4.~2015.12.까지)명목으로 유치원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사전에 관할청 보고 없이 교육지원청의 행정지도 점검결과에 따른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전액 회수 조치에 따라 2016.1.15. 65,580,000원을 회수한 바 있으나, 금번 특정감사 기간 중 추가로 미납된 3,578,000원의 금액이 확인되어 2016.7.5.자로 3,578,000원을 유치원회계로 전액 반납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 2013~2014회계년도 거래내역 중 1,098,864원을 예산의 이월 등 예산편성 절차 없이 2015년도 회계로 잘못 집행하였음(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 매월 30만원~40만원의 현금을 교직원 간식비로 원장 ○○○이 교사 ○○○에게 선 지급하고 차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유치원회계에서 지출(원장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교사○○○은 원장 ○○○으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교사 간식비로 지출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등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유치원 운영 및 원아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재)국립암센터에 2,000,000원을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000,000원	
<input type="checkbox"/> 교재교구 세금계산서 미신고 ○ 2014~2015년까지 유치원 운영 교재교구, 문구류 구입 등의 집행 시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38건 33,735,034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신고 하였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식자재 계산서 미신고 ○ 2014학년도 기간동안 유치원 식자재 집행 시 거래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국세청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25건 136,500,700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미신고 하였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성남 희소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101,158,63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지출증빙서류없이 현금 인출 및 적립금 운용 부적정</p> <p>○ 2014~15학년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일명 원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8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물품구입, 공사와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계산서 등 회계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노후시설 대수선 등을 위한 적립금 92,000,000원(이자1,308,638원 제외)을 2015.2.26.부터 현재까지 관할청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또한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유치원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였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101,158,638원</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미신고</p> <p>○ 2014년 유치원 생태체험비[(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유치원 교육운영총괄)] 집행 시에는 총9건 21,602,2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유치원 생태체험비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3건 5,368,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함</p> <p>○ 2014~2015년 교재교구비[(주)■■■■캠프] 로 집행한 총13건15,806,000원에 대하여 국세청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기관명 : 용인 강남대사범대학부설유치원 [경고]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차량계약 부적정 및 안전관리 소홀</p> <p>○ 통학차량 전세버스 임대 계약을 (주)□□□□관광(대표: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미청구하고 업체 기사(△△△ 외 1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2014~2015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대하면서 차량 계약 시 안전 관련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일부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의 안전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음. 또한, 차량 임대 계약서에 유치원의 날인(서명)이 없어 정당한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2014, 2015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 2015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결산서의세입액과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 세출액의 목별 금액과 상이하게 작성하였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과소 지출함. ○ 수익자부담경비를 반환처리 할 경우 수입에서 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중 급식비 79,054,900원 반환 시 “상환금” 목으로 지출 처리하여 수익자부담경비 수입 업무를 소홀히 함.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용인 아란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33,605,48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6명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급식재료 구매검수서 미작성 ○ 급식 주거래업체 외에 □□□□에서 농산물과 장류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면서 2015년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식재료(감자, 고구마, 들기름, 고추장, 매실) 인수 시 <2015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식재료 구매·검수서를 작성하지 않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현장학습 차량 안전관리 소홀 ○ 2014~2015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대하면서 차량 계약 시 안전 관련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경고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 2015학년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유치원회계가 아닌 설립자 개인계좌로 총 4회, 3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시 운전	경고 원장 1명 보전 33,605,48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자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와 고용 및 산재 신고 누락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 등 총 15건, 1,605,48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함.</p>		
<p>□ 현금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 후 개인계좌로 입금 등 회계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15년까지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용역비, 공사비, 급식물품 구입비 등의 집행 시 다수의 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 급식관련 물품 구입, 인건비 등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카드나 통장이체 등으로 하지 않고, 현금(총 14,080,000원) 및 원장 등 개인명의 신용카드(23,325,529원) 사용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 집행건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 놀이터 시설 내 조경관리(보식, 방제 등)를 위한 경비를 집행 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와 근로계약 등의 체결 없이 필요시에 놀이터 시설 내 조경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총 11,000,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회계년도에는 매월 월정액(1,000,000원)을 사무직원 봉급 과목에서 급여의 성격으로 지출함.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시설공사 계약관리 업무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4. 2. 유치원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징구하지 않아 실제 공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선급금 50,000,000원을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였음에도 계약이행보증서 미 징구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지급액 130,000,000원 중 112,877,6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징구함 ○ 2015. 8. 21. 유치원 외벽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과세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에 따른 검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음 ○ 유치원 유리교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았으며, 공사완료에 따른 검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음.</p> <p>○ 조경공사 대금 25,000,000원 지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인 ■■■조경화원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함.</p>		

□ 기관명 : 용인 숲속동그라미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 4,593,54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p> <p>○ 타기관 경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4,593,540원을 부당 수령.</p>	<p>경고 원장 1명</p> <p>회수 4,593,540원</p>	

□ 기관명 : 수원 나라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328,882,1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상이함.</p>	경고 원장 1명	
<p>□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p> <p>○ 2014,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학부모에게 징수하여 수납하였고,</p> <p>○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중 현장학습비와 교재 및 재료비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을 학부모로부터 수납 받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p>	경고 원장 1명	
<p>□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p> <p>○ 원장 ○○○은 2014, 2015년 실제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총 2년간의 근로소득 76,651,280원을 과소 보고함.</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급여 업무 부적정</p> <p>○ 2015년 급여 업무 시 사학연금 개인별 공제액이 청구액에 비해 총 1,184,170원 과소하게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함.</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184,170원</p>	
<p>□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p>	주의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2014(2014.3.5. 기준, 유아 수 265명), 2015학년도(2015.3.5. 기준, 유아 수 270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위원 1명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5명, 총 8명이 정당한 위원이 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원인 9명보다 적게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가수영장 공사 및 불법농지전용하여 학습장 공사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2015년도까지 3차례에 나누어 실내 수영장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였고, ○ 또한, □□ □□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2014년 학습장 공사비로 6천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위 건에 대하여 용인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음)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310,00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개인차량 주유비 및 차량수리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개인차량 주유비(휘발유) 및 차량 수리비로 총 6회, 1,498,000원을 2014년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함.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498,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신용카드 사용 건 지출 업무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2개를 사용하여 2014 ~ 2015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각 지출 건 별로 지출증빙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신용카드 출금일에 “운영비, 비씨카드 출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 건의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별 각 1건으로 지출증빙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지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p>경고 원장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및 현장학습 안전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차량 전세버스 임대 계약 지출과 관련하여, 업체대표가 아닌 운전기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누락시킴. ○ 유치원과 차량기사 2명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16,200,000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함. ○ 2014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하여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할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6,200,000원</p>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 원장은 2014. 9. 1.부터 2015. 2. 16.까지 매주 월요일 17:00~21:00 총 21회에 걸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유아교육 최고위 과정 연수”를 참여하면서, 출장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여 연수에 참여함.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수원 홍하유치원 [경고]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원장 및 행정직원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후 원장계좌로 입금 등 ○ 2014 ~ 2015학년도까지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원장 및 행정사무직원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입 후 원장 및 원장 개인 계좌로 총 122건 26,812천원을 입금 처리함. ○ 2014 ~ 2015학년도까지 유치원 통학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총 48건 166,204천원을 지급하면서 거래 사업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 교육행정사무국장의 2014, 2015년 실제 급여를 축소 보고하여 총 2년간의 근로소득 54,547,298원을 과소 보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기관명 : 수원 나라유치원 [경고/ 회수조치 : 13,680,000원]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 타기관 겸직하고 있는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13,680,000원을 부당 수령.	경고 원장 1명 회수 13,680,000원	

기관명 : 의정부 유정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80,427,8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공사비 부당 집행 ○ 3층까지 유치원 용도로 승인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또는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유치원 용도로 승인 받지 않은 설립자 모친과 공동소유인 4~5층 시설물의 시설공사비(35건, 180,427,810원)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80,427,810원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38건, 103,800,4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회계연도독립원칙 위반 등 ○ 유치원 운영 물품 구매시 대금을 유치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 이체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선 지급(총 245건, 34,757,280원)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 계좌로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증빙서를 누락하였고, 집행일이 잘못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있음 ○ 예산의 이월 등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 없이 2013년도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료(3,859,500원)를 2014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설명절 선물구입비(소고기 외 2종 6,420,000원)지출에 관하여 회계서류에 지급내역등을 첨부하지 않아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 ○ 일시불로 유치원 통학버스 구입(1대, 53,150,000원)을 하였으나, 대금 지급 방식을 할부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지수수료 1,432,892원을 발생시켜 유치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김포 참조은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7,846,7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겸 원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 유치원 설립자 겸 전) 원장 ○○○(현 퇴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2014학년도는 겸직허가와 복무 조치 없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타유치원의 비상근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5학년도는 별도의 겸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제 목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직허가 없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1일 8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타유치원의 이사장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32건, 54,494,778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색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input type="checkbox"/> 예산 낭비 ○ 교직원 급식비(월 60,000원)와 원장 □□□과 교사 ○○○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비(6,157,770원)와 교직원 점심 식비(1,689,000원)를 이중 지급하였고, 통학차량 운전사의 식비를 운영비와 수익자부담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증빙서류 첨부 없이 명절 선물 구입을 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7,846,770원</p>	

기관명 : 김포 조은유치원 [경고]

제 목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부적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시 해당 유치원의 교원이 아닌 설립자를 교원대표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한 사실이 있음</p>	<p>주의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1건 15,034,14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색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	--

기관명 : 평택 나사렛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26,972,9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운영위원회 인원 구성 부적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시 원아 수에 따른 교원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한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4대보험 업무처리 부적정 ○ 소속직원(□□□, 만70세)을 채용하여 급여 지급 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수익자 부담경비 관리 소홀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 않은 채 세입보다 초과 지출한 사실(차액 : 6,439,538원)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78건, 71,713,76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색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강사비 및 교재비 지급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증가를 유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사학연금 대역상환금 처리 및 기부금, 교사 수당 집행 부적정 ○ 원장 □□□, 원감 ○○○ 개인의 사학연금 대역 상환금 납부 시당해 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하여 납부함(대상 : 원장 □□□ 938,550원, 원감 ○○○ 2,034,420원, 총 2,972,970원)	경고 원장 1명 보전 26,972,97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현금을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대상 : 2013학년도~2015학년도 총 24회, 24,000,000원) ○ ■■■ 유치원은 교직원 휴가비 지급시 금융회사의수표,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전산망을 통한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2014 ~ 2015학년도 총 4회, 7,900,000원) 		

□ 기관명 : 평택 대일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24,883,57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74건, 206,377,854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국세청 통보</p>	
<p>□ 적립형 저축보험 무단 가입 및 부당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교육지원청에서 만기환급형 신규보험가입 불가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 200만원, 15년만기, 12년납의 만기 환급형 보험을 무단으로 가입하였고, 전 원장 □□□의 장녀 ○○○의 계좌로 정당한 사유없이 14,7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14,760,000원</p>	
<p>□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 및 결산서 작성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부담교육비 중 앨범비 집행 후 남은 잔액 8,634,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수익자부담교육비의 세출로 명시하여 결산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 교직원 수당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명절 수당, 휴가비, 스승의 날 기념포상 수당의 지급 시 금융회사의 수표, 금융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하였고, 지급 대상자, 개인별 지급액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input type="checkbox"/> 교비 사적사용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비에서 유치원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전) 원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차량 주유비,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개인물품 구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10,123,574원	
--	--	--

기관명 : 시흥 보람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4,349,95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지출업무 소홀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비 회계 집행 시 유치원 명의 법인카드 대신 설립자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금액을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설립자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음(대상기간 및 해당 금액 : 2014. 3 ~ 2016. 1, 총 162,010,123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통학차량 월 임차료를 계약업체가 아닌 차량기사들에게 지급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선물 구입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집행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대상 : 총 9건, 21,835,400원)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241건, 426,062,11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4대보험 업무처리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교원을 제외한 비교원의 경우 사학연금대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4~2015년도 유치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가 선결재 후 유치원교비에서 이체받은 금액 또한 사용처와 사용시기가 유치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4,349,950원	

기관명 : 성남 희연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15,029,84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 부적정</p> <p>○ 2016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관련 규정에 없는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을 편성(2016. 2. 29.)하여 유치원회계에서 타계좌로 4,444,423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4,444,420원</p>	
<p>□ 편성된 예산과목 없이 교사수당 현금지급 및 지출증빙서류일자 불일치</p> <p>○ 2014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교원수당(목)에 참여수업교사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음에도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4. 5. 28. 참여수업교사수당으로 부원장 □□□ 외 14명에게 4,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지출증빙서류의 지급일자는 2014. 12. 23.로 되어있고, 2014. 12. 23. 겨울방학교사 상여금으로 부원장 □□□ 외 13명에게 3,300,000원 현금 지급한 건 또한 지출증빙서류의 지급일자가 2014. 12. 23.로 되어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조치불요(퇴직)</p>	
<p>□ 보조교사 인건비(퇴직금 등) 지급 부적정</p> <p>○ 보조교사(□□□)의 급여 및 수당 1,000,000원을 2015. 10. 20.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보조교사(■ ■ ■)의 퇴직금 1,000,000원 또한 2016. 2. 19.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000,000원</p>	
<p>□ (세금)계산서 미청구 및 원장 개인통장으로 이체</p> <p>○ 교재교구 구입 및 회계기장료 집행 시 □□□□에듀(대표 ○○○, 일반과세자, 폐업일: 2016. 2. 29.), ■ ■ ■ ■ 교육(대표 ● ● ●, 면세사업자, 폐업일: 2016. 3. 2.), □□114(대표 ○○○, 일반과세자, 폐업일: 2015. 2. 28.)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여 총 235,283,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운영 교재교구, 문구류 구입대금 등의 집행 시(2015. 1. 7.부터 2016. 2. 29.까지) 일반과세자 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수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 117회, 67,412,27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신고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 3. 10.부터 2016. 2. 18.까지 유치원 운영 교재교구, 문구류 구입 등의 집행 시 거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 81회, 40,824,16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신고 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대금 등의 집행 시 2015. 1. 22.부터 2016. 1. 29.까지 거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지출하면서 총 37회, 4,181,870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 3. 25.부터 2016. 2. 24.까지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 시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지출하면서 총 18회, 5,479,960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정당채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입금 및 이중지출</p> <p>○ □□□주방(대표:○○○)으로부터 물품(86,800원, 2014. 03. 10.)을 구입하였음에도 롯데우리홈쇼핑에 이체하는 등 총 47회, 57,475,760원을 거래처에 입금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음.</p> <p>○ 식품비 등의 명목으로 한우불고기 외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간이 영수증 등을 첨부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고 후에 체크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입금해 2014. 2. 27.부터 2016. 2. 3.까지 총 43건, 2,912,820원을 이중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2,912,82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운영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원장에게 입금</p> <p>○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만 첨부하여 11건, 4,072,600원을 원장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운동회 차량비, 운동회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운전기사 ○○○ 등에게 영수증을 징구해 첨부하여 4회, 1,600,000원을 원장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5,672,600원</p>	

기관명 : 수원 가온유치원 [감봉3월 / 보전조치 : 92,386,71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미등록사업자와 공사 및 대금지급 부적정</p> <p>○ 관할 세무서에 미등록된 사업자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옥상정원공사 등을 집행하면서 서류상 공사계약, 준공, 검사검수, 청구, 지출의 날짜를 한날로 기재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없이 견적서(내역서)만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2014. 5. 2.부터 2015. 3. 24.까지 총 3건, 91,88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연구주임교사(원장의 母)의 업무추진비 원장에게 지급</p> <p>○ 연구주임교사(원장의 母)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명목으로 2014.3.부터 2015.12.까지 총 19회 18,000,000원을 원장(□□□)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8,000,000원</p>	
<p><input type="checkbox"/> 원장연수비 명목으로 원장의 부모 해외여행경비 집행</p> <p>○ 2014.9.6.부터 2014.9.9.까지 4일 동안 원장연수(일본)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원장이 아닌 원장의 부모님이 참가하였고, 연수계획 등 아무런 증빙 없이 2014.9.1.에 2,09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098,000원</p>	
<p><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첨부 등 회계업무 부적정</p> <p>○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 등의 집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 2014.7.2.부터 2016.2.29.까지 일반과세자 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지급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98건, 113,607,690원에 대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증빙서류 일체 미첨부 : 유치원 물품 구입비, 공사비 등의 집행 시 2014.7.2.부터 2016.2.29.까지 유치원 회계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집행한 총 251건, 91,860,115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 시 2014.11.4.부터 2015.10.6.까지) (관)인건비 및 (관)관리운영비가 아닌 (관)수익자부담경비에서 지급하는 등 총 3회, 4,565,4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지출절차 불이행 : 세금계산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014.6.26.부터 2015.8.25.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15.9.7.에 일괄 첨부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예산 및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2014~2015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금액과 상이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원장의 대학원등록금 지급 ○ 자체 규정인 「유치원 세부원칙(내규)」(2014.5.1.제정)을 근거로 2014. 8. 29.부터 2015. 9. 14.까지 원장 ○○○의 대학원 등록금(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총 3회, 9,025,000원(등록금 총액의 50%)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9,025,000원	
<input type="checkbox"/>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집행 부적정 ○ 유치원 운영비 통장에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비 명목 등으로 2014~2015학년도 총 3회, 3,02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3,020,000원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없이 현금인출 및 실지출금액과 다른 금액 영수증 첨부 ○ 유치원 운영비(현금) 통장에서 총 51회, 47,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일체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①23,500,000원을 집행하고 지출결의서(실 지출액 24,000,000원)와는 ②10,386,461원이 부족한 13,613,539원의 증빙서류(지출일 이전 혹은 이후에 사용한 영수증, 폐업자와 거래한 영수증, 사업자번호가 없는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33,886,461원	
<input type="checkbox"/> 원장 개인차량에 대한 차량대금 일부 및 유류비 지급 ○ 원장 □□□의 명의로 7인승 대형 승용차(33조▲▲▲▲, 모하비)를 2015. 4.에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일시불로 구매한 후(차량대금 45,690,000원), 유치원 회계에서 2015. 4.부터 2015. 12.까지 총 9회, 16,000,000원을 원장 □□□ 개인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기존에 원장이 사용하던 차량과 새로 구입한 위 차량을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시간대와 장소(심야, 주말 등 / 가평, 포천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2014. 6.부터 2016. 2.까지 총 23회, 10,357,250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6,357,250원	

기관명 : 화성오산 동탄프라임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97,085,27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대금 지급 후 계약서 작성 ○ (주)□□□□□□연구소(대표이사: ○○)와 63,776,160원의 스마트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에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2015.03.31.)하였고 계약서에서 대금 지급을 2015. 04. 20.부터 2015. 12. 20.까지 9개월에 걸쳐 매달 20일에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4. 04.부터 2014. 12.까지 대금 지급을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일부 품목(슬레이트PC, 빔프로젝터, 라우터)만 확인하여 출고(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14,929,000원을 과다하게 구매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무면허업체와 계약 증빙서류 없이 공사계약 체결</p> <p>○ LED전등 교체 및 강당 무빙월 설치 공사(계약금액 49,500,000원, 계약상대자: □□전기(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LED전등 교체뿐만 아니라 강당 무빙월 설치 공사까지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전기공사업체와 일괄 계약 체결하여 집행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계약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 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대가 지급 시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외 3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도 해당 공사의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교육비 지출</p> <p>○ 설립자(○○○)의 「서울대 유아최고위과정」 및 (사) □□□□교육개발원(대표 ●●●, 서울시 종로구) 주관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 과정」 등록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9,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9,500,000원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세입예산 관리 부적정</p> <p>○ 설립자 □□□는 차입금 명목으로 2014, 2015학년도에 유치원계좌 등에서 7회에 걸쳐 84,440,000원을 차입한 후 상환은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84,44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확인결과 유치원계좌 간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세입과목을 잘못 지정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설립자 본인의 계좌로 해당금액을 모두 이체하면서 즉시 정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지연·분할 입금처리 한 바, 유치원 세입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공사비 명목으로 설립자 조카에게 입금 후 환급</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통장거래내역 상 공사비 명목으로 2015. 8. 20. 설립자의 조카인 ○○○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6일째 되는 2015. 8. 25. 통장거래내역 상 공사비 취소 명목으로 1억 원을 환급받아 유치원 회계로 다시 여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세출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세출예산 결산 시 실제 현금출납부상의 목별 지출금액과 상이하게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감사요구 자료 제출 시 유치원통장 일부 미제출</p> <p>○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간 (2014. 3.부터 2016. 2.까지) 유치원 회계자료(통장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감사 중 2015. 8. 19. 교직원 급여 72,719,178원이 유치원 교육비 통장에서 유치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받고 나서야 제출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에게 자문료 지급 및 증빙서류 없이 교직원 명절휴가비 현금 지급</p> <p>○ 설립자 ○○○에게 유치원컨설팅 및 부모교육 자문료로 2014.5.23. 3,868,000원을, 2015.2.12. 명절행사 세뱃돈(원아 1인당 1,000원) 390,000원을, 2015.2.12.부터 2016.2.4.까지 교직원에게 명절휴가비로 총 23건 44,200,000원을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3,868,000원	
<p><input type="checkbox"/> 현금, 개인카드 사용 후 설립자와 원장 등에게 대금 지급</p> <p>○ 청소기 구입 등의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2014.3.10.부터 2016.2.29.까지 설립자 ○○○가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치원계좌에서 설립자(○○○) 계좌로 총 141건 52,774,499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행사비 등 유치원운영비 집행 시 2014.3.12.부터 2016.2.29.까지 원장 ●●●이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치원계좌에서 원장(●●●) 계좌로 총81건 4,756,01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교사석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2014.3.12.부터 2016.2.29.까지 사무직원(운영부원장) □□□ 개인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송금해주거나 □□□ 개인카드로 결제 후 유치원계좌에서 운영부원장(□□□) 계좌로 지급하여 총 211건 11,608,890원을 부적</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 겸직 부적정 및 유치원 회계 처리 부적정</p> <p>○ 2014. 3. 1. 설립자 □□□의 남편 ○○○을 정교사로 채용하여 교사의 교육을 보조하고 아동을 보살피며 유치원 내부 시설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2014. 3. 4.부터 △△△△어학원, 2015. 12. 24. 부터 ▲▲▲▲학원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2014. 3. 25. 부터 2016. 2. 29.까지 급여 및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총25건 70,026,27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4. 11. 7. AK백화점에서 닥스핸드백을 설립자(□□□)의 개인카드로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치원회계계좌에서 475,20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 12. 30.부터 2016. 2. 4.까지 ▲▲▲▲학원(원장:○○○)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오감체험활동, 난타활동 등의 체험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총9건 6,935,00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77,436,470원</p>	
<p><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사업자(설립자의 시동생)와 연간 농장 체험 계약 체결</p> <p>○ 원아들의 농장체험 명목으로 □□□(설립자의 시동생)와 연관계약을 체결하여 농장체험을 진행하였는데 체험지 주소인 △△시 △△동 96-2, △△시 △동 ▲▲▲번지는 □□□의 소유가 아니며 확인한 결과 각각의 토지 소유자(■■■, ●●●)와 □□□가 연간 60만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현금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사업자인 □□□와 계약을 체결하고 12회에 걸쳐 총 14,800,000원을 설립자의 시동생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지출</p> <p>○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비 명목 등으로 2014 ~2015학년도 회계 중 교육비 통장에서 3회에 걸쳐 2,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유아연구회비 등으로 2014~2015학년도 회계 중 교육비 통장에서 증빙서류 없이 10회 3,880,800원을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6,280,800원</p>	
<p><input type="checkbox"/> 급식 재료 원산지 미표시 등</p> <p>○ 2014.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한 적이 있었음에도 2015년에도 식재료 검수서의 수산물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경기도교육청 「2015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에 유치원 급식일지의 표준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급식일지를 제작하여 원아급식수(총 인원으로 계산), 급식단가, 주요 식재료, 수량, 위생상태(구체적 적시 미비), 냉장·냉동고 온도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 및 미발급</p> <p>○ 일반과세자인 □□오피스 등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2014.7.11.부터 2016.2.27.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청구서 또는 입금표를 첨부하여 총35건 47,464,730원을 지출하였다가 2016.7.25.부터 2016.11.25.까지 뒤늦게 총 35건, 47,464,73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일반과세자인 ○○○매직세븐 등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2014.3.31.부터 2016.2.24.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가상계좌)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231건, 214,050,76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기관명 : 화성오산 환희유치원 [과면(병합) / 보전조치 : 681,300,13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세입예산 관리와 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원장 ○○○는 2014,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예산을 관리하면서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본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납입받고, 교육청과 화성시에서 교부한 각종 지원금을 개인계좌로 모두 이체한 다음, 해당 월의 원아 현원에 맞게 계산한다는 이유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계좌에서 유치원 회계로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세입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세입예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계좌에서 유치원 회계로 재입금 시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 예산액과 비교하여 부족함 없이 재입금 하였어야 하나, 2014, 2015학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4,762,000원을 과소입금하여 유치원 세입예산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4~2015학년도 입학금 3,630,000원을 현금으로 징수 후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하였고, 이후 결산서에도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또</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4,762,00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한,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5학년도 세출결산 시 실제 현금 출납부 상의 예산(목)별 수입, 지출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수업료 징수 관리 부적절 ○ 원장 ○○○는 2014, 2015학년도 원아의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수업료 상당액이 미납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지 않고, 유치원 규칙에 정해진 수업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118,300,000원, 2015학년도 73,440,000원씩 총 191,740,000원의 미납 수업료를 면제 처리하여 수업료 징수 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191,740,000원</p>	
<p><input type="checkbox"/> 공사대금 원장에게 입금 후 유치원 회계 미반납 및 허위 지출 ○ 원장 ○○○는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2014. 7. 2. 본인의 개인계좌(우리은행 769-07-*****, 예금주 ○○○)로 3,295,000원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계좌이체하였는데, 확인결과 당시 계획되었던 조경공사가 취소되어 업체에 현금으로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환불받고도 유치원 회계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15. 2. 28. 회계말 예산 잔액을 모두 집행한다는 사유로 지출증빙서 상 지출사유를 사학연금(1,000,000원), 전기세 납부(4,000,000원)로 각각 허위기재하고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본인의 개인계좌(우리은행 769-07-*****, 예금주 ○○○)로 금 5,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3건, 8,295,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8,295,00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에서 교사 개인의 대여상환금 지출 ○ 원장 □□□는 교사 ○○○, △△△, ■■■(2016. 2. 29. 퇴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한 금17,400,000원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 매월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하고 연금공단의 대여상환금 고지 시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공제치 아니하고 2014. 3. 부터 감사기간인 2016. 12.까지 유치원회계에서 교사 개인의 대여상환금 총 7,561,0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7,561,070원</p>	
<p><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계약관리 부적절 등 ○ 2014, 2015학년도 원아 등·하원과 현장학습에 필요한 차량 계약을 함에 있어 (주)□□관광(대표 ○○○, 경</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기도 △△시 △△읍)과 「어린이 보호차량 운송용역 계약」, 「견학차량 임대차 운송계약」을 연관계약으로 각각 체결하여 (주)□□관광과의 연간 계약 체결 금액이 2014학년도 금333,660,000원, 2015학년도 693,600,000원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4. 3. 26. 부터 2016. 2. 25.까지 (주)□□관광으로 「어린이 보호차량 운송 용역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64*****007136 예금주 (주)□□관광)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 개인의 계좌(농협 207*****62573 예금주 ○○○)로 금 520,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연합회비 등 지급 ○ 2014~2015회계 교육비 통장(우리 1005-101-*****)에서 유치원 연합회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회, 24,540,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24,540,000원</p>	
<p><input type="checkbox"/> 폐업자와 거래 및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 등 ○ □□칼라(대표: ○○○, ●●●:○○○의 부인)로부터 영상앨범 등을 제작하고 제작비등으로 (2014.03.24. 부터 2015.08.07.까지) 총17회, 51,16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칼라는 앨범제작 당시 폐업업체(폐업일자: 2013. 9. 9.)로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4 ~2015회계연도에 ■■■오피스, ■■■문구, (주)▲▲▲코리아로 부터 문구류, 교재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서 없이 총 66건, 281,405,490원 대금 지급하고, 2016회계연도 2016. 11. 1.부터 2016. 11. 7.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이중지출 및 사적사용 등 예산 집행 부적절 ○ 간식 및 잡화구입 시 2014.3.1. 부터 2015.11.12.까지 유치원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일과 다른 날의 지출증빙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설립자 겸 원장(○○○)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21회, 1,589,400원을 이중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유치원 체크카드 (2014. 3. 5.부터 2016. 2. 28.까지) ① 품목이 부적절한 명품가방(루이비통 등)구입 및 숙박업소·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 37,720,843원을 결제하고, ② 연수계획서 없이 연수</p>	<p>정직3월 원장 1명 보전 301,226,62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비 명목으로 타지역(잠실, 부산, 강릉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275회, 12,903,379원을 결제하여 총 1,032회, 50,624,222원(①+②)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2015회계연도에 원장 등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하여 유치원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874회, 30,083,633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단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증빙서류 없이 2014.11.24.부터 2015.11.25.까지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총 6건, 1,683,000원을 원장의 부(●●●)에게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조리보조 등의 명목으로 증빙서류없이 2015.2.24.부터 2016.1.4.까지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총7건 1,968,500원을 원장의 모(△△△)에게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원장의 아들 ▲▲▲를 2014.3.1.부터 사무보조로, 2015.1.25.부터 현재까지는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기본급 2,000,000원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와 달리 급여를 총4건 6,300,000원을 과다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총20건 7,345,000원 지급하였으며, 교사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증빙서류 없이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에게 총29건 4,599,880원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교사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사무직원(2014.4.1.부터 2014.11.30.)이자 원장의 아들 △△△에게 총25건 2,730,800원을 증빙 서류 없이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원장 ○○○의 근로계약서도 없이 2014~ 2015학년도에 원장 ○○○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한달에 2번 지급하는 등 ①총 51건 399,250,000원 (과다지급 ②6건 54,2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방과후활동교사(체육, 태권도, 다문화, 발레) 등 교직원의 인건비(급여 및 수당 등)를 교직원이 아닌 원장 ○○○에게 ③총 298건 152,372,211원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2015회계에서 잡화구입 등 각종 운영비 집행 시 정당채주가 아닌 원장 ○○○에게 ④총 1239건 542,283,263원을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 원장 ○○○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를 2014.9.29.부터 2015.9.24.까지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총 13건, 4,414,360원 납부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원장 ○○○와 아들(△△△, ▲▲▲)의 항공권을 유치원 체크카드로 구입하거나 전자결제로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2014. 10. 12. 부터 2015.9.28.까지 총 10건 1,442,800원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축조의금 지급 명목으로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p> <p>○ 2014~2015회계에 축·조의금 명목으로 1회에 300,000원에서 부터 2,900,000원까지 교육비 통장에서 설립자 겸 원장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총 83회, 32,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세출 예산에 편성된 목적에 부합된 집행인지에 대한 결정과 정당 지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32,500,000원</p>	
<p>□ 보일러 구입비 등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급</p> <p>○ 보일러구입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2014. 4. 3.부터 2016. 2. 26.까지 총 70건 46,369,080원을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p>□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아들 대학교 입학금 지급 등</p> <p>○ 연수비 등의 명목으로(2014. 8 .26.부터 2016. 1. 29.까지) 일체 증빙서류 없이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사)□□인재교육개발원(○○○)에 총 9건, 15,591,000원을 지급하여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교사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의 아들이자 사무장인 ○○○의 고려대학교(유아교육과) 입학금 및 수업료, 둘째 아들 ○○○의 □□연기아카데미비 등을 일체의 증빙서류없이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총 30건 39,710,400원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55,301,400원</p>	
<p>□ 원장 개인소유의 차량할부금, 보험료 및 자동차세 납부 등</p> <p>○ 원장(○○○) 소유의 차량 보험료를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일체 증빙서류 없이(2014. 12. 17.부터 2016. 1. 18.까지) ㉠총 5건 3,725,030원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원장(○○○) 소유의 자동차비 및</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35,218,04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계약비를 유치원 체크카드(2889)로 결제하거나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일체 증빙서류 없이 지급하여 2015. 11. 3., 2015. 11. 23. ㉠총 2건 3,017,960원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2013. 12. 10.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모하비 디젤3.0 차량1대를 45,510,000원 36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매월 할부금을 일체 증빙서류 없이 ㉡총 23건 25,380,442원 납부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2014. 11. 5.부터 2016. 2. 23.까지 자동차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유치원교육비계좌에서 ㉢총 14건, 3,094,610원 납부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농장 체험학습장 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p> <p>○ □□시 □□동 341-*번지를 농장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장관리인 ○○○과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농장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시 □□동 341-*번지 소유자는 ○○○이고 ○○○은 ○○○과 구두로 농장관리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미등록 사업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4회에 걸쳐 총 2,8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고구마밭 추가비와 고구마줄기 구입비 총 2건 156,000원을 농장관리인 ○○○이 아닌 ○○에게 착오로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56,000원</p>	

기관명 : 안산 세라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2,588,59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p> <p>○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영(지입, 임대)하면서 부정당 채주에게 57,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사적 사용</p> <p>○ 유치원 운영비에서 1,620,000원 상당 개인 용도의 김치냉</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장고를 구매하고, 사은품(10만원 상품권)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운영비 10,968,590원을 개인 용도의 차량 유지비, 식사비, 물품 구입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보전 12,588,590원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증빙서류 미비치와 세금계산서 미신고)</p> <p>○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71건, 74,674,042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 실시 및 4대보험 미가입</p> <p>○ 총무 김○○ 등의 직원 급여 지급시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안산 세라숲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49,930,25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시설 공사비 부당 집행</p> <p>○ □□유치원 시설 공사시 유치원 용도가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3층)의 시설공사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총 13건 178,469,120원 중 2건 32,684,390원 부당 집행)</p>	경고 원장 1명 보전 32,684,390원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p> <p>○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영(지입, 임대, 자가)하면서 부정당 채주에게 91,277,910원을 지급하였고, 자가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25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겸 원장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 설립자 겸 원장 ○○○는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2012 ~ 2014.4.17 기간동안 영리업체 세계학원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사적 사용 ○ 유치원 운영비 17,245,862원을 개인 용도의 차량 유지비, 식사비, 물품 구입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7,245,86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증빙서류 미비치와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없이 총 69건, 104,698,725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 실시 및 4대 보험 미가입 ○ 총무 김○○ 등의 직원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수당 부당 지급 ○ 원장 ○○○는 국가공무원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 정○○에게 교사교육 명목으로 10,600,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이천 이화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7,828,84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증빙서류 미비치와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99건,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96,382,782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사적사용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운영비 7,828,840원을 개인 용도의 식사비, 물품 구입 등을 유치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7,828,84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방과 후 과정 특성화 수업시간에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영어, 블록 등의 수업을 동일한 날에 실시하여 원아 1인당 1일 2회 특성화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적립형 저축보험 가입 부적정 및 부당지출 <input type="checkbox"/> 만기환급형 신규보험가입이 불가 안내를 받고도 만기환급형보험에 총25,339,560원을 불입하였고, 해지 환급금 15,822,851원을 무단으로 교재, 교구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명의로 생활보장보험을 유치원 회계에서 총 720천원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군포의왕 창의마을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51,563,68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03건, 196,574,37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체 원아들을 대상으로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지출업무 소홀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집행 시 유치원 법인카드나, 정당채주에게 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17,909,333원을 개인이 선 집행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학부모로부터 현금 징수한 2015학년도 입학금 및 원복비 총 20,750,000원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 징수처리 하지 않고 원장 ○○○의 개인 통장에 무단으로 보관 후 재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 부적정 ○ 유치원 시설이 아닌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도시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유지보수 용역료 총 92,804,9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1,305,740원은 어학원비용)398.58/1736.16비율	경고 원장 1명 보전 21,305,740원	
<input type="checkbox"/> 세금 집행 부적정 ○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재산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과 교직원 ○○○의 개인 자동차세 총 3,515,86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음 (2,447,810원, 어학원과 비율 398.58/1736.16비율)	경고 원장 1명 보전 2,447,810원	
<input type="checkbox"/> 사적사용 등 ○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처와 사용시기, 사용내역 등이 유아교육 및 유치원 운영과 관련없는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주말 개인식사 등에 총 6,113,770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6,113,770원	
<input type="checkbox"/> 공무외 국외여행 ○ 원장 ○○○는 별도의 허가 신청 및 교육지원청의 허가 없이 2014~2015학년도 총 136일간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휴가기간 범위를 초과한 일수의 공제없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1,696,36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통학차량 불법대여 및 안전지도 부적정 ○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수업 이후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였고, 학원과의 계약관계 없이 불법으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전액을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통학차량 임차료 일부 금액을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경고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지급하였고, 임대차량임에도 소속 기사와 업체에 명절휴가비 및 차량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부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고, 지입차량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기관명 : 군포의왕 소중한아이들유치원 [정직1월 / 보전조치 : 57,073,88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43건, 194,803,224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시설적립금 무단 적립 및 사용 ○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 총 86,000,000원을 납입하면서 적립금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립유치원 재산 관리실태 조사 시 해당 보험가입 현황 및 시설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벽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고자 시설적립금 60,000,000원을 부당하게 중도 인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아 1인당 1일 1프로그램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였고,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학부모로부터 현금 징수한 2015학년도 입학금 총 8,840,000원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 징수처리 하지 않고 원감 ○○○의 개인 통장에 무단으로 보관 후 재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 2014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건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에 총 17건 620,96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통학차량 임차료 일부 금액을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지출업무 소홀 ○ 회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 및 정당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장, 원감,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선 결재후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76,786,74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복무실태 부적정 및 교비 사적 사용 ○ 가정용 식재료, 식사, 개인용 물품 구입 등으로 총 57,073,888원을 사적으로 집행하였고, 원장과 교직원은 사적 집행액 중 일부는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57,073,880원	

기관명 : 시흥 모아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54,658,9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26건, 181,292,45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시설 공사비 부당 집행 ○ 유치원 시설 공사 시 유치원 용도가 아닌 설립자 자녀가 운영하는 학원(4층)의 시설공사(10,450,000원)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0,450,000원	
<input type="checkbox"/> 결산서 작성 부적정(퇴직적립금 기재누락) ○ 2014~2015년 총 31,773,762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결산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 ○ 2014~2015년도 유치원 회계에서 정당 채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원장의 남편이 28,260,320원을 선 집행 후	경고 원장 1명 보전 44,208,9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유치원 회계에서 남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유치원 운영비 44,208,970원을 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식비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 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교육을 실시하 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 을 실시하였고, 일부 특성화 강사에 대해 범죄경력 조 회 및 강사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학부모로부터 현금 징수한 2015학년도 원비 총 43,208,928 원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 징수처리 하지 않고 원 장 ○○○의 개인 통장에 무단으로 보관 후 재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목적 외 집행 ○ 통학차량으로 임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면서 운전기사 에게 지급 근거가 없는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 스 승의 날 상여금, 음악회 상여금 등으로 총 850,000원 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지출업무 소홀 ○ 유치원 회계집행시 유치원 법인카드나, 정당채주에게 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49,621,050원을 개인이 선 집행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시흥 소망유치원 [정직3월 / 보전조치 : 68,479,04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 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 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 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150건, 127,113,50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근무상황부 허위 작성 및 강사비 부당지급 건 등 ○ 근로사실이 불분명한 관내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인 ○○○을 2013.7~2015.12.23.까지 미술보조교사로 등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50,514,0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록하고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월 급여로 1,800,000원씩 총 50,51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직원 ●●●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유치원에 영어강사로 출강하면서 총 19,838,437원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아 1인당 1일 1프로그램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특성화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및 현장학습 차량 운영 부적정</p> <p>○ 통학차량을 임대로 운영하면서 임차료를 정당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소속 운전자의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총 77,408,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보호 조항을 차량 임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원아들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p> <p>○ 원장 ○○○ 및 교직원 ●●●, △△△의 식사, 개인용 물품 구입, 주유 등으로 총 11,530,630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11,530,630원	
<p><input type="checkbox"/> 정당채주에게 대금 미지급과 유치원회계에서 연금 개인부담금 등 납부</p> <p>○ 회계 집행시 정당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대납자, 강사의 친인척 등에게 총 17,223,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 일부 교직원에 대해 총 6,434,410원의 4대 보험과 연금 개인부담금을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6,434,410원	

기관명 : 부천 하늘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65,769,69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p> <p>○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68건, 67,191,580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적 사용 등 ○ 유치원회계 집행 시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원장 개인의 자유비, 유치원연합회비,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등 총 37,416,69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37,416,69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정규교육과정 시간내에 외부 학원 강사를 채용하여 원아 전원에게 영어, 체육 등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통학차량 2대에 대하여 원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어학원과 총 77,000,000원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어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함에도 유치원 교비로 차량의 관리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지입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학부모로부터 현금 징수한 입학금 및 학비 총 8,513,550원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 징수처리 하지 않고 원장 ○○○의 개인 통장에 무단으로 보관 후 재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시설 공사비 과다 집행 ○ 조경공사 등 4건의 공사시 준공단계에서 계약서·설계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총 28,353,00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8,353,000원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상반기 감사기간 : 2017.03.06.~2017.07.28.)

(하반기 감사기간 : 2017.08.28.~2017.12.2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관명 : 구리남양주 예향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27,117,290원]

지 적 사 항	제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결산 시 세입부분에 있어 실제 입학금 납입액을 결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급식비 지원금을 수익자급식비 항목과 혼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 상이하게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 실시 및 4대보험 미가입 ○ 2014년 방과후교사 ○○○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지급 총액 188,796,050원)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지출증빙서류 미비 및 개인카드 사용 ○ 2014~2016학년도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정당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공사 관련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대금을 집행(28건 12,078,080원)하였고 또한 유치원 명의의 체크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 후 대금을 지급(11건 458,450원)하여 총39건 12,536,530원에 대해 지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공사계약 업무관리 소홀 ○ 2014. 12. 31.부터 2015. 1. 9.까지 주방공사를 ○○종합공사(사업자 종목: 조립식건축, 샷시)와 14,010,000원을 수의계약하면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5,760,000원)를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였으며, 공사 내용·금액·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와 서로 주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재산세(토지) 납세 부적정 ○ 2015. 9. 23.에 재산세(토지) 명목으로 489,52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중 교회에서 운영하는 1층 카페에 대한 재산세(토지) 372,040원을 포함한 금액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372,040원	
<input type="checkbox"/> 주방 및 체육시설 임대료 납부 부적정	경고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2011. 3. 10.에 급식실 교구기준에 상응한 자료를 제출하여 규칙변경인가를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5.부터 2016. 2. 25.까지 급식실임대료 납부 명목으로 동일건물의 동일재단 소유 교회에게 매월 백만 원씩 총 24회,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전 24,000,000원	
□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 2014. 4. 2.부터 2015. 4. 1.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7회, 금 1,46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460,000원	
□ 공공요금 이중납부 ○ 2014. 3. 25.부터 2016. 12. 26.까지 관리비(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명목으로 ○○교회에 매월 백만 원씩 총 33회에 걸쳐 금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14.부터 2016. 08. 17.까지 추가로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1,285,253원을 이중으로 지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285,250원	
□ 2014~201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견학차량비 집행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견학차량비 집행 시 운전면허증 혹은 거래처 명함, 통장사본만 첨부하여 ○○○등에게 2015. 1. 22.부터 2017. 2. 10.까지 총 134회 27,3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6학년도 식재료와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강사료 지급 시 관계법령에 근거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369건 123,059,0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 기관명 : 구리남양주 오남사랑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5,247,11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유치원 회계 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결산 시 세입부분에 있어 교육지원청과 시청에서 교부한 유아학비, 급식비 등 각종 지원금을 유치원회계통장으로 입금 받고도 결산서 작성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지원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금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부족하게 작성하여 결산 보고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시청에서 교부하는 급식비 등의 지원금의 세출결산 시 [(관)관리운영비 (항)유치원운영비(목)특정목적사업비]에 별도 항목으로 결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른 예산목에 혼용하여 결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급식비 등 지출 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징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출결의서나 현금출납부를 미작성하여 지출장부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 결산액이 불일치하는 등 임의로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p> <p>○ 2015년 01월부터 2017년 01월까지 화장실 바닥공사 외 7건의 각종 소규모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증빙서류가 전혀 없거나 영수증만 첨부하여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일부 공사는 인부들이 인건비 분배 관계로 설립자가 갖고 있던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설립자에게 이체하고, 옥상 텃밭공사의 경우 공사가 취소되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 3,300,000원을 지출하는 등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3,300,000원</p>	
<p><input type="checkbox"/>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상환 이자 등 납부</p> <p>○ 원장 ○○○과 직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기사로 재직, 설립자 ○○○의 배우자), ○○○(종일반도우미로 재직, 설립자 ○○○의 자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급여와 대여상환 이자 지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 없이 2015. 12. 28.부터 2016. 12. 06.까지 총6회 2,936,66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직접 납입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936,66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p> <p>○ 교재교구구입 및 방과후과정 관련 집행 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지출결의서도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4. 3. 31.부터 2017. 2. 16.까지 총 49건 25,786,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졸업앨범비 등의 집행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2014. 3. 14.부터 2017. 2. 27.까지 총386건 112,211,364원(㉡)을 집행하여 총 435건, 137,997,864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에게 지급</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교직원 급여를 설립자에게 지급 교직원 급여를 해당교직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설립자가 교직원에게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22,232,375원을 지급하여 부적정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차량기사 급여를 ○○○ 및 ○○○에게 총 4회, 10,254,8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년 1월, 2월, 5월, 8월에 ○○○(원장)이 통학차량 기사업무를 겸직한다는 명목으로 원장 급여 외에 차량기사겸직급여를 원장이 아닌 설립자 ○○○에게 총 4회에 걸쳐 5,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물품 현금 구입 후 설립자에게 입금 2014. 3. 26.부터 2017. 1. 18.까지 청구서, 견적서등 지출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거래업체의 대표 계좌번호로 직접 이체하지 아니하고, 설립자가 현금으로 구매 후 유치원회계계좌에서 설립자계좌로 이체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p>	<p>-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 공적사용료 지급 ○ 2015. 12. 15.부터 2016. 11. 01.까지 공적사용료 명목으로 ○○○氏(설립자)에게 총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7,500,000원</p>	
<p>□ 급식 운영 부적정 ○ 2016년 5월, 7월, 12월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하였고, 경기도교육청 「2016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에 유치원 식재료 검수서 및 급식일지 표준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자체 제작한 식재료 검수서 및 급식일지 서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원아 급식 수(총 인원수로 계산), 급식단가, 주요 식재료, 수량, 냉장·냉동고 온도를 표시하지 않은 등 유치원 급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 수익자부담교육비에서 기부금 납부 등 ○ 수익자부담교육비에서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참사랑노인복지센터에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공통운영비에서 연합회 광고 및 현수막비 명목으로 일반과세자인 ○○현수막(대표:○○○)에게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총3건 1,510,4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510,450원</p>	

□ 기관명 : 화성오산 예인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289,224,020원 /
학부모환급 : 275,280,440원]

제 목 사 양	제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회계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학년도 유치원 회계결산 시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및 결산요령」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는 급식비 지원금의 세출결산 시 [(관)관리운영비 (항)유치원 운영비 (목)특정목적사업비]에 별도 항목으로 결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른 예산(목)에 혼용하여 결산 처리하였으며, 또한 출납폐쇄기간 지출건을 결산서에 미반영하여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 결산액이 불일치하게 되는 등 부적정하게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p> <p>○ 교원연수, 공동운영비 항목에서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2014. 12. 16. 부터 2017. 1. 2. 까지 총 11건 6,034,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6,034,000원	
<p>□ 현금 지출 부적정</p> <p>○ 상여금, 수당, 청소용역인건비 견학차량비 등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만 첨부하거나 수기 영수증만 첨부해놓고 2014. 3. 12.부터 2017. 2. 1.까지 총 444건, 183,745,6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음.</p>	정직3월 원장 1명 보전 183,745,670원	
<p>□ 휴일, 타지역 거래 등 사적사용</p> <p>○ 평일 근무시간 중 혹은 공휴일에 유치원 소재지(○○)가 아닌 원장자택 소재지(○○) 등에서 부적정한 품목(○ ○ 종량제봉투, 주류 등)을 유치원 체크카드로 구매하는 등 2014. 4. 9.부터 2017. 2. 18.까지 총 103건, 14,099,183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2017. 3. 20. 원장(○○○) 계좌에서 유치원 교비계좌로 15,000,000원을 보전조치 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p>□ 2014~201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견학차량비 집행 부적정</p> <p>○ 2014~2016학년도 현장학습 차량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 차량임차계약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영수증, 차량일지를 첨부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2014. 4. 21.부터 2016. 12. 29.까지 총 122건, 38,676,8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업무용 차량 운용 부적정</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 2014. 3. 5.부터 2015. 2. 5.까지 유치원 업무용 차량(산타페 DM, 34부****)을 카드할부로 구매하여 ㉠금 39,900,834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4~2016년도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 비용으로 ㉡금2,313,290원을 지출하였는데 2014, 2015년도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음. 또한, 업무용 차량의 운행 시 정당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명령기록(근무상황일지),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 업무용 사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나 관련 자료를 일체 구비하지 않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2014. 4. 9.부터 2017. 2. 10.까지 원장 ○○○의 주소지(○○)나 유치원 소재지 외 타지역에서 주유 후 27건 ㉢1,873,457원을 주유비로 지출하거나 2014. 3. 26.부터 2016. 7. 18.까지 차량수리비 및 과태료 등 11건 ㉣6,624,770원을 업무용 차량 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보전 50,712,350원</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운용 부적정</p> <p>○ 2012. 10. 25.자로 만기환급형 저축보험(무배당 내일&한화명품저축보험, 10년납)을 가입하여 매월 3,853,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3. 7월 「2013년도 사립유치원 재산 관리실태 조사」 시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월 사용계획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 상에 보험 가입목적은 퇴직금과 시설사업비 적립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2015.3.10.부터 2017.2.7.까지 총 3회, 157,000,000원의 보험금을 중도인출하면서 121,995,896원을 교육비 부족액 보전과 통학차량 구입비로 지출하여 당초 보고한 적립 목적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 세금계산서 미청구 등</p> <p>○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p> <p>2014. 4. 1.부터 2017. 2. 1.까지 ○○이벤트(대표: ○○○)의 대표계좌가 아닌 ○○○·○○○ 개인계좌로 15,954,000원 지급하였으며, 교육산업 유아○(대표: ○○○)의 대표계좌가 아닌 ○○○ 개인계좌로 5,871,000원을 지급하여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총 21,8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지출증빙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미청구 등)</p> <p>가. 교재구입비 등</p> <p>2014. 3. 5.부터 2017. 2. 22.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아이 외 29개 거래처로부터 전자</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38,982,000원</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총 925,023,678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아이 외 29개 거래업체 (세금)계산서 신고액은 659,065,949원(㉡)으로 차액 265,873,329원(㉢=㉠-㉡)을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교육산업 유아○이 2015. 12. 31.에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7.에 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나. 시설공사</p> <p>2014. 4. 4.부터 2015. 12. 11.까지 시설공사 집행 시 해당 공사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출증빙서류(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갖추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IBZ입금</p> <p>2014. 8. 25.부터 2017. 2. 24.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이 계좌이체를 IBZ입금 방식(다계좌이체)으로 총 108회에 걸쳐 1,609,535,514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교직원 급식비 미징수</p> <p>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에서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한 급식예산에서 교직원 급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교직원 급식비 산정액(38,982,000원) 보전 조치</p>		
<p><input type="checkbox"/> 세입업무 부적정(수익자부담금 과다 징수)</p> <p>○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계좌(㉣)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여 학부모에게서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의 명목으로 총 275,280,445원을 과다 수납 받았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총 254회에 걸쳐 271,863,711원을 현금 인출하였으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의 지출은 교육청에 보고한 계좌(㉤)에서 업체로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p> <p>학부모환급 275,280,440원</p>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p> <p>○ 2014. 11. 29.부터 2017. 2. 24.까지 ○○○, ○○○에게 각각 보조교사, 조리사 명목으로 급여를 총 9,750,000원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을 미공제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누락시키고 출근부 서명 날짜가 급여지급 기간과 상이한 사실이 있음.</p>	<p>갑봉3월 원장 1명</p> <p>보전 9,750,000원</p>	

□ 기관명 : 화성오산 이지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349,742,600원]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p> <p>○ 2014학년도 유치원 회계 세출결산서 작성 시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 세출결산액이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결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운용 부적정</p> <p>○ 2012. 10. 25.자로 만기환급형 저축보험(무배당 내일&한화명품저축보험, 10년납)을 가입하여 매월 3,95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3. 7월 「2013년도 사립유치원 재산 관리실태 조사」 시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2014. 6월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 상에 보험 가입 목적을 시설사업비 적립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2016. 3. 15. 당초 보고한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교직원 퇴직충당금을 관리한다는 사유로 1억 원을 중도 인출하여 유치원 계좌에 별도 보관해 온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p> <p>○ 유치원 운영비에서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2015. 3. 26.부터 2016. 6. 24.까지 총 3건 3,28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3,281,000원</p>	
<p>□ 현금 지출 부적정</p> <p>○ 급간식재료비 등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나 거래업체의 간이영수증을 여러 건 첨부해놓고 합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4. 3. 12.부터 2017. 1. 6.까지 총 941건, 235,313,9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235,313,910원</p>	
<p>□ 휴일, 타지역 거래 등 사적사용</p> <p>○ 평일 근무시간 중 혹은 공휴일에 유치원 소재지(○○)가 아닌 설립자 자택 소재지(○○) 등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예산과목과 맞지 않는 부적정한 품목을 구입하는 등 2014. 7. 29.부터 2017. 2. 28.까지 총 168건, 21,416,4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21,416,490원</p>	
<p>□ 세금계산서 미청구 등</p>	<p>감봉3월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p> <p>2014. 4. 1.부터 2017. 2. 1.까지 ○○이벤트(대표: ○○○)의 대표계좌가 아닌 ○○○ 개인계좌로 26,160,5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교육산업 유아○(대표: ○○○)대표계좌가 아닌 ○○○ 개인계좌로 1,705,500원을 지급하여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총 27,86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문구사가 2015. 12. 31.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7.에 988,350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p> <p>○ 지출증빙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미청구 등)</p> <p>가. 교재구입비 등</p> <p>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아이 외 17개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하여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총 923,885,77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아이 외 17개 거래업체의 (세금)계산서 신고액은 711,092,140원(㉡)으로 차액 212,779,130원(㉢=㉠-㉡)을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p> <p>나. 시설공사</p> <p>2014. 5. 12.부터 2016. 12. 28.까지 시설공사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적격공사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출증빙서류(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갖추지 않고 부적정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IBZ입금</p> <p>계좌이체 시 IBZ입금 방식(다계좌이체)으로 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이 총 67회에 걸쳐 2,169,133,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교직원 급식비 미징수</p> <p>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에서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한 급식예산에서 교직원 급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교직원 급식비 산정액(89,731,200원) 보전조치</p>	<p>- 조치불요(퇴직)</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89,731,200원</p> <p>국세청 통보</p>	
<p>□ 세입업무 부적정(수익자부담금 과다 징수)</p> <p>○ 2016학년도에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별도의 계좌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여 학부모에게서 원비를 총 213,589,680원을 수납 받았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6. 5. 10.부터 2017. 2. 15.까지 총 18회에 걸쳐 62,272,330원을 일체의 지출 증빙</p>	<p>정직3월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기관명 : 화성오산 즐거운유치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보전조치 : 1,514,00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타기관, 개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 등</p> <p>○ 타기관, 개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 등</p> <p>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의 집행 시 유치원이 아닌 타기관(○○어린이집)이나 개인(원장의 남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놓고 유치원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4. 3. 6.부터 2017. 2. 27.까지 총 19회 1,796,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개인(원장의 남편)과 아시아나항공(주)○○지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첨부 후 지출한 4건 588,500원 보전)</p> <p>○ 세금계산서 미발급</p> <p>2014~2016학년도 위탁차량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위탁차량비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해당 월에 맞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출하는 등 2014. 3. 10.부터 2016. 12. 6.까지 유치원 계좌에서 총 60회, 337,099,6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운용 부적정</p> <p>○ 2013. 6. 28. 시설개보수비용 및 교직원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만기환급형 보험(KDB연금보험-고액적립)을 가입하고 각각 월4,500,000원, 월2,600,000원씩을 지출해온 사실이 있는데, 관할 지원청에서 2013년 7월 실시한 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 관리실태 조사 내용에 의하면 통학버스 차량보험과 현장학습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적립금 가입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4년 이후 예·결산서 제출 시 보험가입사항을 별지서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관할청에서 보험가입 사항, 적립금 사용 계획 검토 및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결산 시 설립자 차입-상환금을 결산내역에 일부 누락시키는 등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는 상이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결산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 지출 부적정</p> <p>○ 2010.12.29. 설립자 ○○○은 유치원 건물 일부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10.31. 관할청의 지도점검 시 해당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미이행하여 2011. 12. 19. 정원감축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2012. 2. 9. 관할청을 상대로 정원감축처분취소소송(○○지방법원 2012구합 16**호)을 제기하여 2012. 6 27. 패소한 사실이 있음. 이후 관할청에서 설립자 ○○○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2014. 5. 27. 유치원회계에서 금1,514,000원을 관할청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1,514,000원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p> <p>○ 원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p> <p>2014. 3. 31.부터 2017. 1. 26.까지 원장 급여 명목으로 금 256,113,51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원장 급여 지급 시 공제합계액 과소기재</p> <p>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원장(○○○)의 급여 명세서에 사학연금, 의료보험, 교직원공제회비에 대한 공제액을 과소 기재하였으며, 급여 지급 시 총 1,079,33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회계기장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p> <p>프리랜서(○○○)와 유치원 노무 및 회계 관리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2014. 3. 10.부터 2016. 6. 10.까지 유치원계좌에서 총 28회 8,400,00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p><input type="checkbox"/> 급식비 운영 등 부적정</p> <p>○ 급식비로만 집행해야 할 예산임에도 운영비 항목(항아리 등 구입) 등으로 금3,050,000원, 간식비로 명목으로 금 1,724,010원을 집행하는 등 총4,774,0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살림(○○점) 등의 업체로부터 구매한 식자재에 대해 식재</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료 구매·검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식일지(식단명, 주요식자재, 수량 등)와도 식자재 구입과 수량 등이 불일치하며, 또한 거래일자 별로 지출한 자료를 확인 결과 식자재 구입내역이 없거나 증빙서류 구비 없이 금 9,237,4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6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외부업체에 위탁(출강 계약)하여 숲체험(2016학년도), 체육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명의별도 계좌 개설 운영 및 거래내역 미 제출</p> <p>○ 특정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간(2014. 3. ~ 2017. 2.)의 유치원 회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감사 기간 중 유치원 명의 별도계좌가 확인된 바, 회계 감사 시 유치원 회계 계좌 거래내역(파일 자료)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해당 계좌에 대한 소명 및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폐기한 통장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p>	정직3월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p> <p>○ 미인가 시설공사 집행</p> <p>2006. 3. 6. 관할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기간(2014~2016회계) 동안 총 1,054,262,6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음.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는 관할청으로부터 사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총 443,750,0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할청의 사전 인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실시한 사항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 외 부당하게 집행한 것임.</p> <p>○ 기타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p> <p>감사대상 기간(2014~2016회계) 동안 총 1,054,262,6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사에서 증빙서류(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 등)가 없거나 견적서(내역서)에 1식 등으로만 표시하여 내역서의 물량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p>	정직3월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자격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세금계산서 미신고 등 ○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재교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육 외 21개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총 679,471,85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교육 외 21개 거래업체의 (세금)계산서 신고액은 총 16,816,200원(㉡)으로 차액 총 662,655,650원(㉢=㉠-㉡)을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 한편 ○○○ 외 11개 업체(해당업체 또는 폐업된 업체는 해당 대표자가 현재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2017. 5. 2.~ 2017. 5. 24.에 총 575,8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특정감사 중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결과적으로 미신고금액은 총 86,764,500원(㉤=㉢-㉣)임.</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 기관명 : 화성오산 나인유치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보전조치 : 217,697,62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타 유치원 영수증 첨부하여 대금 지급 등 ○ 타 유치원 영수증(계산서)첨부하여 대금 지급 등</p> <p>차량 리스료 지급 시 회계서류철에 설립자의 다른 유치원 명의로 발행된 자동이체영수증이나 전자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현대캐피탈(주)에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 총10건 15,716,456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세금)계산서 미발급</p> <p>위탁차량비 등의 집행 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거나 국세청 발급사실이 없는 (전자)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2014. 3. 10.부터 2017. 1. 10.까지 유치원 계좌에서 총57회 409,031,699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운용 부적정 ○ 2013. 6. 28. 시설개보수비용 및 교직원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만기환급형 보험(KDB연금보험 - 고액적립)을 가입하고 각각 월4,500,000원, 월2,600,000원씩을 지출해</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은 사실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2013년 7월 실시한 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 관리실태 조사 내용에 의하면 통학버스 차량보험과 현장학습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적립금 가입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4년 이후 예·결산서 제출 시 보험가입 사항을 별지서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관할청에서 보험가입 사항, 적립금 사용계획 검토 및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결산 시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목)별 지출금액과는 상이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결산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원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등 2014. 03. 07.부터 2017. 01. 27.까지 원장에게 급여 및 수당명목으로 총 3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장이 개인사업체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유로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이 아닌 현금 및 대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원장 급여 일부는 ○○○(○)유치원 및 ○○유치원 설립자, ○○○의 아내)에게 부적절하게 지급(금21,000,000원)한 사실이 있음. ○ 회계기장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프리랜서(○○○)과 유치원 노무 및 회계 관리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2014. 3. 11.부터 2016. 6. 10.까지 유치원계좌에서 총 21회 6,900,000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p><input type="checkbox"/> 급식비 운영 등 부적정 ○ 급식비로만 집행해야 할 예산임에도 급식이 아닌 운영비 항목인 향아리 구입비 등으로 원아의 급식비 총 10,506,2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살림(○○점) 등 지역에서 식자재로 급식 식단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구매처와 거래일자를 확인한 결과, 당일 식재료 구매·검수서 작성에 필요한 구입 내역서가 없고, 식재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식일지(식단명, 주요 식재료, 수량 등)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총701,16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보전 358,96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6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외부업체에 위탁(출강 계약)하여 숲체험(2016학년도), 체육 등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p> <p>○ 미인가 시설공사 집행</p> <p>2012.02.13. 관할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기간(2014~2016회계) 동안 총 745,309,0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음.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는 관할청으로부터 사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총 183,086,86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할청의 사전 인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실시한 사항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 외 부당하게 집행한 것임.</p> <p>○ 허위 시설공사 집행</p> <p>2014.09.03. ○○공조(대표 ○○○)와 냉난방 공사 계약을 44,000,000원에 체결하고 2014.09.05.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감사 기간 중 현장 방문하여 설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싱글천장형 냉난방기 1대만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내역은 설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34,251,800원)하였음. 이는 납품 없이 대가를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예산을 목적 외 부당하게 집행한 것임.</p> <p>○ 기타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p> <p>감사 대상 기간(2014~2016회계) 동안 총 745,309,000원의 시설 공사를 집행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사에서 증빙서류(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 등)가 없거나 견적서(내역서)에 1식 등으로만 표시하여 내역서의 물량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217,338,660원</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미신고 등</p> <p>○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육 외 17개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2014.</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3. 1.부터 2017. 2. 28.까지 총 642,194,834원(㉠)을 집행하였으나, ○○교육 외 17개 거래업체에 대한 세금 신고액(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액)은 229,614,284원(㉡)으로 미신고금액(차액) 412,580,550원(㉢=㉠-㉡)임. 한편, ○○세상 외 6개 업체로부터 2017. 5. 13. ~ 2017. 5. 24.에 총 268,572,55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특정감사 중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결과적으로 미신고 금액은 총 144,080,000원(㉤=㉠-㉡-㉣)임.</p>		

□ 기관명 : 수원 창의나라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66,749,00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불법건축물(물놀이장) 설치 ○ 2014년 5월에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전 인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치원 옥상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이는 불법건축물(미인가시설)로서 유아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놀이 시설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견책 원장 1명</p>	
<p>□ 해외연수비 지출 부적정(이중지출) ○ 2014. 7. 23.부터 7. 26.까지 원장 등 교사 13명이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당시 설립자 겸 원장이었던 ○○○는 여행업체에 계약금 및 연수경비를 선지급한 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치원회계에서 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2014. 7. 10.자 교원연수비로 지출한 15,749,000원과 2014. 9. 4.자 교원해외연수비로 지출한 15,749,000원은 동일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중지출한 것으로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연수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15,749,000원</p>	
<p>□ 감가상각비 등 지출 부적정 ○ 2015. 3. 31.부터 2015. 6. 26.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감가상각비 및 사유재산 공적사용료 명목으로 총 34,100,000원을 유치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출하였고, 이후 2015. 7. 27.자로 34,102,880원을 다시 교비회계 계좌로 여입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운용 부적정</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p> <p>2014. 3. 25.부터 2014. 9. 30.까지 시설적립금 및 차량적립금 명목으로 각각 월7,904,000원, 월5,928,000원을 만기환급형 보험(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에 납입하면서도 관할청에 미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특정감사시 위 보험은 유치원회계에서 지출이 불가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을 소명하였고, 납입도중 해당 명목의 지출이 불가한 것을 인지하고 2014. 10월부터 납입을 중단하고서 보험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이 있음.</p>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의 목적 외 사용</p> <p>2012. 9. 13.자로 노후시설 보수비용의 적립과 교직원 퇴직적립금 적립 목적으로 만기환급형 보험(동양생명 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 적립형)에 가입하고 각각 월 4,935,000원, 월 3,454,500원을 납입해 온 사실이 있으며, 그 중 퇴직적립금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는 임의로 적립용도를 변경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2015학년도 결산서 상 보험가입 내역에 보험가입 목적을 차량구입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 3. 31.부터 2016. 8. 3. 까지 위 2개 적립금에서 총 168,480,000원을 중도 인출하여 퇴직금, 교원급여, 강사료, 사학연금, 교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당초 적립 목적과는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현 ○○유치원 원장</p> <p>경고 원장 1명</p>	
<p>□ 원천징수 미이행</p> <p>○ 강사료 지급</p> <p>2014~2016학년도에 과학강사 ○○○외 6명에게 강사료 총 242,407,5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7,999,4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 현 ○○유치원 원장</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2014~2016학년도 견학차량비, 장부기장료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등)</p> <p>○ 2014~2016학년도 견학차량비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발급)</p> <p>2014~2016학년도 현장학습 차량비 집행 시 차량임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2014. 5. 14.부터 2016. 12. 14.까지 총 46건, 46,820,000원을 (주)○○관광 계좌가 아닌 대표 ○○○계좌, 유치원 우체국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2014~2016학년도 장부기장료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신고)</p> <p>2014~2016학년도 장부기장료를 e-○○(대표: ○○○)에 매월 55,000원씩 자동이체로 지급하면서 종이세</p>	<p>경고 원장 1명</p> <p>- 현 ○○유치원 원장</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금계산서만 첨부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2014. 3. 25.부터 2017. 2. 27.까지 총 36건 1,98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예산과목 부적정</p> <p>○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및 기타)</p> <p>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로 주류(술)를 구입하는 등 2014. 3. 31.부터 2016. 4. 26.까지 총6건 3,251,840원을 예산과목 및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수익자부담경비(교재비)</p> <p>2014. 3. 5.부터 2015. 2. 23.까지 학부모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안내하여 징수한 금액을 계정과목 수익자부담교육비-교재비 항목으로 세입처리 하고도 주유비 및 견학비 등의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24,529,830원을 지출하여 징수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별도 계좌 개설 및 사용 부적정</p> <p>○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유치원 명의의 우체국계좌 및 국민은행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우체국 계좌</p> <p>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유치원 명의 계좌를 2003. 8. 11.에 개설하여 유치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각종 유치원 운영비, 상여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찾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2014. 3. 5.부터 2017. 2. 20.까지 총 519건 784,828,6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이 계좌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감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날(2017.5.12.) 해지한 사실이 있음.</p> <p>○ 국민은행 계좌</p> <p>2014. 3. 5.부터 2017. 3. 2.까지 이월금 보관명목으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국민은행계좌를 운용하였으며, 2016. 3. 8.에 국민은행계좌에서 51,000,000원을 설립자 ○○○에게 송금하는 등 유치원 계좌관리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51,000,00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6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영어, 체육, 과학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경고 원장 1명</p>	

기관명 : 수원 성민유치원 [감봉3월(병합) / 보전조치 : 116,658,28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별도 계좌 개설 및 사용 부적정</p> <p>○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유치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2016. 1. 29. 별도 개설하여 ○○학원의 학원비 수납 계좌로 사용해 오다 2017. 2. 28. 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2016. 3. 22.에 특성화활동비(다문화)교육비를 교육청지원계좌에서 현금으로 15,85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지출증빙서류에는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기업은행계좌에서 (주)○○학원의 계좌로 15,850,000원 입금한 확인증을 첨부해 놓은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감봉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p>보전 15,850,00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차량임차료 지급 부적정</p> <p>○ 차량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 [(합)가나 (대표: ○○○, 폐업: 2014.04.30.)]의 입금표만 첨부하여 차량기사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4. 7. 1.부터 2016. 5. 3.까지 총24건 22,247,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등)</p> <p>○ 지출증빙서류 미비((세금)계산서 미발급 등)</p> <p>2014~2016학년도 급식 식재료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하거나, 거래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거나 지출증빙서류 없이 총 185건 354,224,831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부적정(타지역, 휴일사용, 타기관 포인트 적립)</p> <p>2014~2016학년도 급식 식재료를 유치원체크카드로 휴일에 유치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구입하고 ○○어린이집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영수증 사본만 첨부하는 등 총 43건 1,781,3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p>보전 1,781,390원</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 활동비 지급 부적정</p> <p>○ 직책급업무추진비(설립자 활동비) 명목으로 일체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 등 개인에게 2014. 7. 21.부터 2015. 6. 22.까지 총 8건 4,341,447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4,341,44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노작활동 등 집행)</p> <p>○ 노작활동 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p> <p>2014~2015학년도 다문화체험활동에 공급자(○○○ : 설립자의 딸)와 계약을 체결(경기도 ○○시 ○○구 ○○면</p>	<p>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감봉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리 456(토지대장 상 지목 : 답)에서 상추심기 등 노작활동 명목)하여 ○○○에게 총22건, 20,722,000원,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에게 총4건, 3,42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그림대금 집행 부적정</p> <p>유치원 실내 환경 조성 명목으로 2015. 3. 2. 화백 ○○ ○ 그림 5점 외 13점, 2016. 9. 8. ○○○ 그림 2점 및 액자 구입 등 총6건, 54,992,01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및 재산세(건축물) 집행 부적정</p> <p>재산세(건축물) 집행 시 동일 건물 설립자 아들 ○○○이 운영하는 ○○학원(4층 402호, 5층), 의원(6층)과 별도로 분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학원 및 의원 재산세(건축물) 총2건, 3,165,704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 9. 16. 재산세(토지) 집행 시 유치원(○○동 550-9, 491.1㎡)은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물 내 ○○학원, 의원(○○동 550-*, 318.8㎡)과 설립자 ○○○ 소유의 토지(○○동 518, 1661㎡)에 대한 재산세(토지) 총12,379,7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보전 94,685,450원</p>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학년도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은 09:00부터 14:00까지이며,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은 14:00부터 19:30까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시간(13:00부터 13:50까지)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하여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인 다문화(영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 적립금 적립 부적정</p> <p>○ 2017. 2. 28. 공사 적립금 명목으로 173,000,000원을 유치원 명의의 다른 계좌(적립금 적립용으로 개설, 개설일자 2017. 2. 21.)로 이체하였는데, 적립금의 적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청에 적립사실과 사용계획 등을 보고하여 납입금액, 목적, 기간 등을 검토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p>□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전자(세금)계산서 미신고, 정당 채주 아닌자에게 지급, 현금 지급)</p> <p>○ 주요 거래업체 집행 부적정</p> <p>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체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학원(설립자의 딸이 운영)외 3개 업체 대표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 ○○○(설립자의 아내)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총 432,10</p>	<p>감봉3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감봉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5,496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학원 외 6개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1,142,916,696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학원 외 6개 거래업체의 세금신고액은 총 368,410,790원(㉡)으로 차액 총 774,505,906원(㉢=㉠-㉡)을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p> <p>○ 기타 집행 부적정</p> <p>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대표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서 46,274,647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체에게 지급하거나 교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 ○○○의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유치원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유치원 회계에서 ○○○계좌로 9,418,924원(㉤), ○○○계좌로 79,728,994원(㉥)을 지급하는 등 총 135,422,565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원천징수 미이행</p> <p>○ 강사료</p> <p>2014~2016학년도에 ○○○ 등에게 강사료 총 29,345,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968,35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감</p> <p>국세청 통보</p>	
<p>□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p> <p>○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하였는데(2014년 8월 11일, 계약금액 9천9백만 원)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주)○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종 중 전기공사(6,754,300원)를 분리 발주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계약보증금 미징구, 대가 지급 전 검사조서 미작성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리모델링 공사(2015년 12월 10일, 계약금액 1억7천6백만 원)에서도 1억원 초과외 전문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미징구, 계약보증금 미징구, 대가 지급 전 검사조서 미작성, 도면과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증빙서류가 없어 물량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등 공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이외 감사대상기간 동안 8건 총 4억 3천여만의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신고, 전문건설업 미등록한 무자격 업체의 시공(방수공사 및 LED조명</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공사) 등 시설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기관명 : 광주하남 금강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15,003,9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 2014. 3. 28.부터 2016. 5. 3.까지 사적인 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명목으로 총5회, 금7,759,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7,759,000원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출 부적정 ○ 2017. 1. 31.부터 2017. 3. 6.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총2회 금22,950,000원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유치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이후 2017. 3. 31.자로 교비회계 계좌에 환입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업무활동 유류비 지출 부적정 ○ 2014. 3. 7.부터 2015. 11. 25.까지 기관장 업무활동 유류비 명목으로 유치원 체크카드 및 개인카드로 결제한 주유 영수증을 첨부하여 금2,12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는데, 확인결과 해당 지출 건은 유치원에서 행정이사로 재직중인 ○○○(설립자 겸 원장 ○○○의 배우자)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한 것이며, 정당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무상황부 등)를 구비하지 않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사용한 유류비를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125,000원	
<input type="checkbox"/>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관련 업무처리 소홀 ○ 2013. 4. 11.자로 교직원 퇴직급여 적립 목적으로 만기환급형 보험(매월 3,000,000원씩)을 적립한 사실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 적립목적 및 납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 등 납부 부적정 ○ ○○교육관에 대한 세금과 화재보험료 지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및 원장 ○○○와 설립자의 남편(행정이사) ○○○이 공동으로 소유한 ○○교육관(경기도 ○○군 ○○면 ○○리 597-1)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5,119,9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2,123,670원을 ○○군청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교육관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가도 득하지 않았고, 유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재산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세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 3. 24.부터 2014. 11. 24.까지 유치원회계에서 ○○교육관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총 9회 1,8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2014. 12. 19.자로 발생한 만기환급금 6,305,190원을 유치원회계로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의 개인통장으로 수령 받은 후 특정감사 준비기간 중 2017. 6. 16.자로 교비계좌로 재여입한 사실이 있음.</p> <p>○ 개인차량에 대한 세금 납부</p> <p>2014. 4. 29.부터 2017. 1. 26.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및 원장 ○○○의 남편(행정이사) ○○○ 명의의 차량(67너**** 모하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세금 1,843,890원을 업무용차량 세금 납부 명목으로 ○○군청과 ○○시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개인명의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p> <p>2015. 9. 30.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및 원장 ○○○ 개인 소유의 토지(○○시 ○○동 760-1 외 6건)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1,152,340원을 하남시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현금 인출 등)</p> <p>○ 문구류 구입, 교사 간식비 등의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지출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놓고 여러 지출 건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4. 3. 31.부터 2017. 2. 15.까지 총 55건, 205,714,705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견학 차량비 지급 부적정</p> <p>○ 견학 차량비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증서 등) 없이 통장사본만 첨부하여 2014. 3. 13.부터 2017. 2. 20.까지 총 46건, 12,347,5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등)</p> <p>○ 유치원 마루공사비 등의 집행 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청구서 등만 첨부하여 2014. 3. 27.부터 2017. 2. 27.까지 총 87건, 47,939,1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경고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2015~2016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특성화 교육인 플레이팩토 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에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발레, 국악, 미술, 중국어, 태권도, 책보, 토이다, 오르프 등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 원천징수 미이행</p> <p>○ 2014~2016학년도에 교직원 ○○○(설립자 겸 원장), ○○○(설립자의 남편, 행정이사), ○○○(설립자의 아들, 행정실무원), ○○○(설립자의 며느리, 원감), ○○○(설립자의 아들, 사무직원)의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주민세 총 302,846,370원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회계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신고)</p> <p>○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재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육사 외 8개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444,491,10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교육사 외 8개 거래업체의(세금)계산서 신고액은 총 31,008,100원(㉡)으로 차액은 총 413,483,000원(㉢=㉠-㉡)을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 기관명 : 광주하남 한솔숲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712,018,84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회계집행 부적정(설립자에게 무단이체 등)</p> <p>○ 유치원 운영비계좌에서 설립자에게 무단 이체</p> <p>2014. 8. 13.부터 2017. 1. 12.까지 일체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유치원 운영비 계좌에서 29회, 419,991,430원(㉠)을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무단 이체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적립금계좌에서 설립자에게 무단 이체</p> <p>2014. 1. 29.부터 2017. 2. 27.까지 일체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유치원 운영비계좌에서 유치원 적립금계좌로 총 39회에 걸쳐 9,430,000원을 납입해 온 사실이 있는데, 적립 사실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 적립목적 및 납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 적립금 계좌에서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총 2회에 걸쳐 11,195,660원(㉡)을 증빙서류 일체 없이 무단 이체하여 부적정하게 관리</p>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509,247,580원</p>	

<p>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업무추진비 및 휴대폰 요금 지급</p> <p>설립자 ○○○에게 업무추진비(판공비)명목으로 2014. 6. 12.부터 2016. 2. 29.까지 총 24건,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운영비 계좌에서 설립자 휴대폰요금을 2014. 3. 25.부터 2016. 2. 25.까지 총24건 ㉮4,938,4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및 직계가족의 자동차세 등 지급</p> <p>설립자 ○○○ 및 직계가족의 자동차세 등을 유치원운영비 계좌에서 2014. 3. 7.부터 2016. 7. 22.까지 총 34건 ㉮3,122,0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 현장학습비(숲체험비) 지급 부적정</p> <p>○ 설립자 ○○○가 본인 소유의 토지(○○시 ○○면 ○○리 산14-7번지, 236, 236-1번지)에 유치원 숲체험원(대표: ○○○)을 개업(2014.3.1.)하여 현장학습을 진행하였으나 현장학습 일시, 참가 원아, 원아1인당 단가, 차량기사,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 없이 계산서만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일(2015.12.31.) 이후에도 6건 23,34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4. 29.부터 2016. 2. 19.까지 총 46건, 319,8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숲체험원을 2015. 12. 31.에 폐업한 뒤 설립자의 형(○○○)에게 2016. 2. 20.부터 2021. 2. 20.까지 토지를 임대하고 설립자의 형(○○○)을 대표로 한 ○○생태마을체험농장(개업 2016.3.1.)과 현장학습을 진행하였으나 현장학습 일시, 참가 원아, 원아1인당 단가, 차량기사,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 없이 계산서만 첨부하여 2016. 4. 19.부터 2017. 2. 16.까지 총 52건 120,399,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2012~2013학년도 중 설립자에게 지출 부적정</p> <p>○ 2012~2013학년도 중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에게 지급근거가 없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97,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p> <p>보전 197,400,000원</p>	
<p>□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p> <p>○ 2014. 3. 26.부터 2016. 9. 27.까지 사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게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명목으로 총5회, 금4,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4,500,000원</p>	
<p>□ 급식비 운영 부적정</p> <p>○ 급식비 중 인건비를 급식전담직원이 아닌 행정실장(○○○)과 방과후교사(○○○)에게 금16,740,3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중식용 급식비를 교직원용 간식 및 식자재, 방과후 간식 및 식자재 등으로 ㉮금</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871,260원</p>	

<p>829,664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정육’에서 사용처 불명의 식자재 구입비로 금4,308,500원(⊖금41,600원은 보전조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채용 계약 업무 소홀 ○ 2014~2016학년도 방과후 특성화 강사 채용 시 강사 계약서 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등 강사 임용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미술, 영어, 댄스, 클리닉, 몰핀, 발레, 리딩점프)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 회계업무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신고) ○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재교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육 외 9개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164,789,200원(⊖)을 집행하였으나, ○○교육 외 9개 거래업체의 세무서에 세금신고액은 0원(⊖)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 미신고금액(차액)은 총 164,789,200원(⊖-⊖-⊖)임.</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p>□ 원천징수 미이행 ○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직원 ○○○ 외 6명의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금 미공제한 세금은 총 10,672,200원으로 급여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 기관명 : 용인 한별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38,131,340원]

<p>제 목 사 양</p>	<p>처 분 요 구</p>	<p>비 고</p>
<p>□ 세금계산서 미발급 ○ 교재교구업체 (세금)계산서 미발급 2014. 3. 4.부터 2017. 2. 28.까지 교재교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몰 외 20개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총 908,249,170원(⊖)을 집행하였으나, ○○몰 외 20개 거래업체의 세금신고액은 총 388,443,250원(⊖)으로 미신고금액(차액) 총 519,805,920원(⊖-⊖-⊖)임. ○ 프린터 렌탈료 등 (세금)계산서 미발급 프린터 렌탈료 등의 집행 시 거래업체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2014.3.5.부터 2017.2.17.까지 총 210건 50,462,9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개인장기저축급여 납부 등) <input type="radio"/> 유치원회계에서 개인장기저축급여 납부 2013. 3.부터 2016. 5.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겸 원장, 설립자 겸 원장의 자녀의 개인장기저축급여(한국교직원공제회)를 각 11,700,000원씩 총 23,4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radio"/> 처우개선비 이중 지급 2014. 5.부터 2016. 2.까지(21개월) 교원(설립자의 자녀) 처우개선비 월 510,000원을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 10,71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34,110,00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별도 계좌 개설 및 사용 부적정 <input type="radio"/> 유치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원복비 및 교육비(학부모부담금)를 계좌로 납입 받아 유치원교비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원장의 개인적인 자금과 혼용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감사반의 소명요청에 개인적인 입금액 251,786,090원과 출금액 282,632,592원의 차액 30,846,502원을 2017. 7. 5. 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재여입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radio"/> 유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유치원 명의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유치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2014년 유치원연합회비, 2015년 적립금 80,00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해오다 2017. 6. 23. 50,000,000원, 2017. 6. 24. 30,000,000원을 유치원명의의 교비통장으로 재여입한 사실이 있음.	정직3월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원장휴대전화요금 및 재산세 납부) <input type="radio"/> 원장의 휴대전화 요금 및 재산세를 유치원 교비에서 2014. 3. 21.부터 2016. 11. 21. 까지 총 34건 4,021,343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4,021,34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현금지출) <input type="radio"/> 견학차량비 등의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증서사본 등)를 첨부하지 않고 입금표와 차량기사의 수령확인증만 첨부하거나 지출증빙서류 없이 2014. 10. 18.부터 2017. 2. 11. 까지 총 23건 16,703,7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용인 보정자연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61,675,4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	-----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놀이로 하는 언어, 국제문화언어, 미술, 수영, 체육, 성악합창 등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집행 등 ○ 2015. 9. 17.에 유치원 체험학습장 및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시 ○○구 ○○동 1019-5 외 5건 및 ○○동 465-7 외 2건의 설립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총 4,882,3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4,882,310원	
<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식재료 구매·검수서를 미작성하여 급식비 지원 정산 보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고, 2016학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2016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의 표준양식을 따르지 않고 식재료 공급업체(○○키즈푸드)가 제공하는 거래명세서를 식재료 구매·검수서로 대체하여 급식비 지원 정산을 위한 규격과 수량 확인이 불투명하며,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검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6학년도에 검수일지로 대체하는 거래명세서에 중식용 식자재와 간식용 식자재 및 위생장갑·튀김용 온도계 등 소모품비까지 한꺼번에 작성하여, 특정목적급식비·특정목적방과후과정간식비와 수의자부담급식비·간식비, 요리실습용식자재구입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급식비 책정을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한편, 2015~2016학년도에 ○○축산으로부터 구매한 육류 중에서 급식일지의 ‘오늘의 식단’에 기록되지 않거나 ‘오늘의 식단’에 사용된 수량과 일치하지 않아서 사용처 불명인 식자재 구입비로 금11,695,488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11,695,480원	
<input type="checkbox"/> 시설 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 감사대상기간(2014~2016회계) 동안 약 4억 원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유리, 캐노피 공사(계약상대자 ○○창호, 계약금액 16,632천원)외 8건의 공사 총 333,835천원을 금전적 피해 및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및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6건 총 288,640천원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공사 전·중·후 사진 없는 등) 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정직3월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2014학년도 분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징수 시 원아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를 유치원 명의 계좌가 아닌 설립자 ○○○ 개인 명의의 계좌로 사전 수납한 후 2014. 3. 12.부터 2015. 2. 23.까지 설립자 명의 계좌에서 다시 유치원 명의계좌로 총 1,599,663,700원을 입금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립자 ○○○는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수업료 등을 전액 유치원회계로 이체하지 않고 40,150,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p>	보전 40,150,000원	
<p>□ 어학원 내 수영장 보수비용 등 지출 부적정</p> <p>○ 2014. 4. 3.부터 2016. 8. 23.까지 유치원 옆에 위치한 ○○ 외국어학원 【○○시 ○○구 ○○로 30번길 17-5(유치원과 동일지번), 대표 ○○○, 유치원 설립자 ○○○의 배우자】 의 지하 1층 수영장(무인가)에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수영수업을 실시하면서 유치원과 인가 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인 어학원 내 수영장에 대한 물품구입 및 보수비용 등으로 총10건 4,947,61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4,947,610원	
<p>□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4학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다수의 물품 구입이나 용역비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유치원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설립자 (○○○)의 개인 자금으로 선 지불한 후, 매월 1~2회 ‘마감’ 이라는 명칭으로 일정액을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2014. 4. 3.부터 2015. 2. 16.까지 총 224,455,589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p>□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p> <p>○ 차량기사, 종일보조교사 등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유치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관리하지 않고 설립자 ○○○ 명의의 계좌로 2014. 8. 22.부터 2017. 2. 28.까지 금22,375,200원을 이체하여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 기관명 : 용인 죽전자연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121,580,86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6학년도 놀이로 하는 언어, 국제문화언어, 미술, 수영, 체육, 성악합창 등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상</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 소유 재산세(건축물, 토지) 집행 부적정</p> <p>○ 재산세(건축물, 토지) 집행 시 설립자 소유 ○○외국어학원과 별도로 분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6. 7. 26. ○○외국어학원의 재산세(건축물) 총3,457,6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 9. 17. 유치원 외 설립자 (○○○)와 설립자 妻(○○○) 소유의 토지 ○○동 1019-5외 5건(면적 2,272.4㎡), ○○동 465-7 외 2건(면적 1,341.0㎡)에 대한 재산세(토지) 8,067,400원(지출결의서 상 4,882,310원보다 과다 집행), 2016. 9. 20. 재산세(토지) 집행 시 유치원 (○○동 347-5, 611.15㎡)은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번지 내 ○○외국어학원(○○전동 347-5, 585.8㎡)에 대한 재산세(토지) 2,894,528원, 총 10,961,928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14,419,56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현금 지급)</p> <p>○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지출을 하여야 하므로 물품 구입 시에는 거래업체 대표계좌로 이체 하여야 하고, 교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교직원 개인계좌로 이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4.부터 2017. 1. 26.까지 총 90건, 36,223,7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 3. 24.부터 2015. 11. 18.까지 총 4,500,450원(㉠)을 유치원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였으나,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금액은 2015. 3. 25.부터 2015. 12. 31.까지 총 2,843,940원(㉡)으로 차액 1,656,510원(㉢=㉠-㉡)은 지출증빙서류 일체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656,510원</p>	
<p><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p> <p>○ 2014~2015학년도 식재료 구매·검수서를 미작성하여 급식비 지원 정산 보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고, 2016학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2016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의 표준양식을 따르지 않고 식재료 공급업체(○ 키즈푸드)가 제공하는 거래명세서를 식재료 구매·검수서로 대체하여 급식비 지원 정산을 위한 규격과 수량 확인이 불투명하며, ○○축산(대표자 성명 ○○○, 주소. ○○시 ○○구 ○○대로 332)에서 구매한 육류를 식재료 구매·검수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6학년도에 검수일지로 대체하는 거래명세서에 중식용 식자재와 간식용 식자재 및 주방세제·위생모 등 소모품비까지 한꺼번</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에 작성하여,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급식비 책정을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으며, (특정목적급식비· 특정목적방과후과정간식비와 수익자부담급식비·간식비, 요리실습용 식자재구입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서 급식 관련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p> <p>○ 조경 놀이터 공사(계약상대자 ○○조경 ○○○, 계약금액 81,257천원)외 1건의 공사 총 97,000천원을 금전적 피해 및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및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공사 전·중·후 사진 없는 등) 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4학년도 분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징수 시 원아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를 유치원 명의 계좌가 아닌 설립자 ○○○ 개인 명의의 계좌로 사전 수납한 후 2014. 3. 12.부터 2015. 2. 24.까지 설립자 명의 계좌에서 다시 유치원 명의 계좌로 총 975,926,47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설립자 ○○○는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수업료 등을 전액 유치원회계로 이체하지 않고 88,078,430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p> <p>88,078,430원</p>	
<p><input type="checkbox"/> 어학원 내 수영장 보수비용 등 지출 부적정</p> <p>○ 2014. 4. 21.부터 2016. 4. 6.까지 유치원 옆에 위치한 ○○외국어학원 【○○시 ○○구 ○○로 53(유치원과 동일지번), 대표 ○○○, 유치원 설립자】의 지하 1층 수영장(무인가)에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수영수업을 실시하면서 유치원과 인가 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인 어학원 내 수영장에 대한 연료비 및 보수비용 등으로 총12건, 17,426,36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17,426,360원</p>	
<p><input type="checkbox"/>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4학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다수의 물품 구입이나 용역비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유치원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설립자 ○○○의 개인 자금으로 선 지불한 후, 매월 1~2회 ‘마감’이라는 명칭으로 일정액을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2014. 4. 3.부터 2015. 2. 16.까지 총22회, 132,603,087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교직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유치</p>	<p>감봉3월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원회계에서 원천징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가 교직원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세무서에 납부 한 후, 매년 7월 25일, 1월 25일에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계를 운영하여 2015. 7. 10.부터 2017. 2. 27.까지 유치원계좌에서 설립자 ○○○ 개인계좌로 총 7회, 18,353,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p> <p>○ 차량기사, 종일보조교사 등에 대한 퇴직금을 유치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설립자 ○○○ 명의의 계좌로 2014. 8. 22.부터 2017. 2. 28.까지 금23,784,215원을 이체하여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안산 청아유치원 [감봉3월 / 보전조치 : 107,445,830원]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4대보험 미가입</p> <p>○ 주방보조 ○○○ 채용 시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주의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차입금 운용 부적정</p> <p>○ 교육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실내휴게 공간, 2층 주방, 옥상부분을 증축한 사실이 있으며, 총 120,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차입하여 불법 증축, 실내 환경개선공사 및 운영비로 91,0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감봉3월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미신고</p> <p>○ 유치원부지 내 샌드위치 패널 가설건축물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시설관리 부적정</p> <p>○ 현재 지하층 보일러실 및 기계실 내부를 창고 형태로 사용하고, 종이박스 및 유치원 교구를 쌓아두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p>	주의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주의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p> <p>○ 2015학년도 놀이터 및 유치원 환경개선공사 시 계약상</p>	경고 원장 1명	

<p>대자로부터 인지세, 계약이행보증금을 미징구하였고, 공사대금지급 시 시방서, 세부내역서, 공사과정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교비 사적사용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연합회 회비, 급식재료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총 10,153,500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0,153,500원</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input type="checkbox"/> 2014~2016학년도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233건 364,971,849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적립금 운영 부적정 및 부당 지출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에 보험과 관련한 보고 없이 만기환급형 보험(교보생명)을 무단으로 적립하여 2017.4까지 총 62회 62,000,000원을 납입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위 보험적립금 외에 설립자 ○○○ 명의의 통장으로 9,192,380원 등 총 40,871,330원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적립금과 관련한 사용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적금에 총 25,000,000원을 무단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96,192,330원</p>	
<p><input type="checkbox"/>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및 회계집행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5학년도 ○○시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집행 시 현금출납부 작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권한 없는 자의 회계집행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는 2014~2016학년도 학교장의 장으로부터 지출명령 직무에 관한 위임 및 지출원으로서의 임면 절차도 없이 유치원 회계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회계 증빙서류 미보존 <input type="checkbox"/> 2014~2016학년도 징수 및 지출결의서 작성 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의 다수를 누락하고, 2017.3.24. 유치원 교비 계좌 해지 시 금융회사의 거래실적 입증 출력물 또는 전산화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계획 시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특성화 활동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다문화(영어)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 교수학습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비 중 예산편성의 목적과 달리 2016년도 교직원 연수비 지원 명목으로 총 13,9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원장 ○○○은 교직원 연수 시 해당 교직원들의 복무에 대한 조치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지출업무 소홀 ○ 유치원 회계 집행 시 정당채주의 예금계좌에 입금 또는 전산망을 통한 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교직원과 그 가족 등이 선결재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거나, 부정당 채주인 교직원이 거래하는 가상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19,202,408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하였고, 통학차량 임차료(차량도색비, 경광등 설치비 총 1,100,000원) 등을 부정당 채주인 운전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보전 1,100,000원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부적정 집행 ○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입학금 및 물품비, 2017학년도 입학금을 포함하여 총 16,975,000원을 설립자 ○○○가 현금으로 수납하여 무단으로 보관하고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재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안양과천 연성대학부속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3,815,000원]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4대보험 미가입 ○ 방과후과정반 강사 ○○○ 채용 시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공무원가 경비 정산 부적정 ○ 수목구입 및 자연학습장 수목정리작업 공사 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1,001,000원을 정산처리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6학년도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73건 194,079,2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교비 사적사용 ○ 원장 ○○○ 및 교직원의 식사, 단체 후원금 등으로 총 3,815,000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3,815,000원	
<input type="checkbox"/> 지출업무 소홀 ○ 통학차량 임차료 총 129,690,000원을 부정당 채주인 운전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업무 소홀 ○ 유치원 회계 장부 정리를 위한 회계장부 컨설팅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800,000원의 수당을 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기관명 : 김포 프라임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193,019,83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 주 출입구확장, 옥상공간 일부증축, 1층화장실을 상담실로 변경하는 총 29,523,340원의 시설 공사를 관할청의 변경허가 없이 집행하였고, 공사대금지급 시 준공관련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29,523,340원	
<input type="checkbox"/> 권한 없는 자의 회계집행 ○ 직원 ○○○은 2015학년도 학교장의 장으로부터 지출명령 직무에 관한 위임 및 지출원으로서의 임면 절차도 없이 유치원 회계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제도 운영 부적정 ○ 2014년부터 유치원은 신규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2014.4.21.~현재까지 월 2,000,000원 납입 조건의 만기환급형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여 교비에서 지출하였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78,000,000원	
<input type="checkbox"/> 회계집행 부적정 ○ 2016. 2. 설립자 ○○○ 소유의 차량을 유치원 통학차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량 이용 목적 외로 구입하면서 유치원 교비에서 차량구입비 총 11,055,972원과 보험료 총 1,424,530원을 집행한 후 2017.7.5. 총7,002,432원을 교비계좌로 반납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보전 5,478,070원</p>	
<p><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유치원에서 구입한 통학차량 74수 ****를 매매계약 및 차량의 처분 대가 없이 타유치원에 이전하였으며, 74수 ****의 차량보험료 1,158,630원과 타유치원의 통학차량 78거 ****의 차량보험료 166,760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40,515,390원</p>	
<p><input type="checkbox"/> 지출업무 소홀 ○ 개인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선결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거나, 부정당 채주인 교직원이 거래하는 가상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11,154,530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 부적정 ○ 유치원 동일 건물 내 ○○어학원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를 분류하지 않고 교비에서 총 10,300,693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10,300,690원</p>	
<p><input type="checkbox"/> 교비 사적사용 ○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개인용 물품구입,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29,202,343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29,202,340원</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6학년도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로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9건 1,160,886,463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교비회계계좌 대여 및 유치원 회계관리 ○ 2014.7.~10까지 총 9차례 이상의 자로부터 교비계좌로 현금을 입금 받은 후 다시 설립자가 운영하는 (주)○○인퍼스로 총 120,000,000원을 출금하여 교비회계 통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 2014~2016학년도에 복수의 금융계좌에서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서류(현금출납부 기재, 지출결의서, 견적서, 영수증, 송금확인서, 계산서 등)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수납된 학부모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고, ○ 유치원명의의 계좌를 ○○어학원, 보습학원에서</p>	<p>정직3월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음		

□ 기관명 : 김포 프라임운양유치원 [경고(조치불요-퇴직) / 보전조치 : 11,458,4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 2016학년도 방과후교사 ○○○ 등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인계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 시 본인의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의 급여액을 배상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 주 출입구확장을 위해 총 6,050,000원의 시설 공사를 관할청의 변경허가 없이 집행하였고, 공사대금지급 시 준공관련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6,050,000원	
<input type="checkbox"/> 권한 없는 자의 회계집행 ○ 직원 ○○○은 2016학년도 학교장의 장으로부터 지출명령 직무에 관한 위임 및 지출원으로서의 임면 절차도 없이 유치원 회계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타유치원으로부터 이전받은 통학차량 74수****, 79고****의 어린이통학버스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 부적정 ○ 유치원 동일 건물 내 ○○어학원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를 분류하지 않고 교비에서 총 20,545,317원(어학원 분 : 2,194,353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2,194,350원	
<input type="checkbox"/> 교비 사적사용 ○ 전 원장 ○○○○ 및 교직원의 식사, 단체 후원금 등으로 총 3,214,060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3,214,060원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2014~2016학년도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 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46건 96,612,431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불요(퇴직) 국세청 통보	

□ 기관명 : 화성오산 리더스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388,150,3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 2015. 3. 26.부터 2017. 4. 17.까지 임의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회비로 10건, 총 5,47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보전 5,476,000원	
<input type="checkbox"/> 설립자에게 이체 부적정 등 ○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일부 보전의 명목으로 유치원명의의 계좌(입학금과 기타물품비 등 수납용)에서 설립자 개인계좌로 2016. 3. 2. 7,591,835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7. 5. 29.자로 위 계좌를 해지할 당시의 잔액 6,048,032원(㉡)을 원인불명의 금액이라는 사유로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해 온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13,639,860원	
<input type="checkbox"/> 숲체험장 임대료 및 공사비 지출 부적정 ○ 설립자의 자녀(2017. 03.부터 유치원 연구실장으로 근무)가 소유한 체험학습장 부지(○○농장 외 3개 체험장, ○○시 ○○동 27 외 8필지)에 대해 2016. 02. 29.자 토지 임대차 계약(2016. 02. 29.부터 2019. 02. 28.까지)을 체결하고 월9,530,000원 납부하여 2017. 06. 30.까지 총 138,530,000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설립자의 자녀)가 토지 매입 시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교비에서 과다 지급하였기에, 타 체험장 3곳과 비교하여 산정하여 월 이용료 차액 133,168,000원(㉢)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숲 체험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계약서 제2조의 “교육용 시설물의 설	정직1월 원장 1명 보전 208,676,5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치는 허락하되 계약기간 만기 시 반드시 철거 후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들어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적(私的)인 시설인 위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2016. 5. 17.부터 2017. 6. 30.까지 14회 총 75,508,510원(㉔)을 유치원회계에서 체험장 원아 화장실 조성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원상 복구에 교비 지출</p> <p>○ 2016. 12. 27. ○○종합건설(주)과 ○○광장 온실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옥상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구조물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또한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시설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공사 실시 전 공사의 필요성,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예산서에 미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건축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보고 없이 일시에 불요불급한 건축 공사에 자금을 집행함. 이로 인하여 관할 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철거)하는 등 불법건축물의 건축비(㉕ 99,528,000원)과 원상복구(철거)비(㉔21,450,000원)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정직3월 원장 1명 보전 120,978,000원</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현금인출 등)</p> <p>○ 현금 인출</p> <p>2015. 3. 10.부터 2017. 6. 7.까지 교직원 명절 상여금 및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집행 시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총 65,867,55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지출증빙서류 미비 (영수증 미청구 등)</p> <p>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집행하였으며, 2015. 04. 03.부터 2017. 6. 30.까지 현금출납부 상 물품 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주)○○아카데미 외 8개 업체에게 총 257,026,250원(㉕)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주)○○아카데미 외 8개 업체에</p>	<p>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감봉1월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대하여 총102,137,000원(㉠)만을 신고하여 차액 총 154,889,25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p> <p>○ 차량임차비 세금계산서 미청구</p> <p>어린이 등하원용 버스의 임대차 계약을 (주)○○투어(대표:○○)과 체결하고 차량운행세부내역서(청구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주)○○투어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5.4.7.부터 2017.6.30.까지 총 106건 230,7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외부업체와 강사 파견 계약을 맺고 음악, 체육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p>□ 원장 퇴직위로금 등 지급 부적정</p> <p>○ 원장 퇴직위로금 및 인센티브 지급</p> <p>자체 규정인 「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아래 2016년 2월 24일에 전 원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인센티브명목으로 20,000,000원, 총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2월 21일에 교사 2명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3,000,000원씩(총 36,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 원장 해외 여행경비 지급</p> <p>(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교원연수에서 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2017.1.28. 출발하는 3박 4일 여정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상품을 인터파크투어에서 결제(2017.1.17., 3,380,000원㉣)하였는데, 이는 원장 연수가 아닌 원장과 원장의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로 유치원교비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감봉1월 원장 1명</p> <p>보전 39,380,000원</p>	
<p>□ 급식 운영 부적정</p> <p>○ 영양사 급여 지급 근거 미비</p> <p>2015. 04.부터 2016. 11.까지 영양사와 용역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영양사가 근무일지대로 업무와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영양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에게 총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관련 서류 작성 불철저</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경고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산서 공급가액(270,000원)과 합계금액(470,000원)이 불일치하며 2014.3.18.에 폐업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등</p> <p>○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재교구 구입 및 각종 체험학습비를 설립자 겸 원장의 남편(유치원 사무직원)이 대표로 있는 (주)○○차일드에 총 251건 350,614,7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반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지출결의서에 세출착오로 인한 집행금액 반환 기안문과 입금내역을 첨부해놓거나, 각종 체험학습건의 거래명세서의 청구금액과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한편, 촬영 및 인화비 명목으로 유치원 지하1층에 사업자를 낸 설립자 남편의 다른 업체 ○○필름에 2014. 7. 30.부터 2016. 3. 3.1.까지 총 9건 5,4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신고하였으며, 그 중 4건은 업체계좌로 이체 하지 않고 CD기에서 인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사적사용 등)</p> <p>○ 사적 사용</p> <p>가. 개인 체크카드 예산 및 구입 품목 부적정 집행</p> <p>2014. 3. 20.부터 2016. 1. 22.까지 유치원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체크카드를 총 9,436,6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위 개인 체크카드사용 내역 중 개인용으로 사용(유치원 자체 판단)하여 2017. 2. 21.에 1,865,000원을 자체 보전하였으며, 교육목적 지출금은 2,214,980원임. 한편, 그 사용 내역 중 일부는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로 총 1,410,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식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총 3,946,350원(㉡)을 유치원 급식비 지원계좌가 아닌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지출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나. 개인(설립자 겸 원장의 남편) 휴대폰 요금 및 통신료 납부</p> <p>2014. 3. 6.에 2월분 전화요금 (SK텔레콤)명목으로 231,870원(㉢), 2014. 3. 21.부터 2016. 11. 21.까지 통신요금(SK브로드밴드)명목으로 3,271,827원(㉣) 집행하여 총 3,5</p>	<p>감봉1월 원장 1명</p> <p>보전 4,914,040원</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03,697원(㊸=㊸+㊸)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유치원 전화요금 및 통신료가 아닌 개인(설립자 겸 원장의 남편)의 휴대폰 및 통신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겸 원장(○○○) 개인 계좌로 이체</p> <p>2015. 1. 14.부터 2017. 3. 31.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22,164,120원(㊸), 2014. 3. 19.부터 2016. 11. 01.까지 학습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269,270원(㊸) 집행하여 총 40,433,390원(㊸+㊸)을 집행하였으나, 집행 시에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설립자 겸 원장(○○○)의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후 유치원계좌에서 설립자 겸 원장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원비 사적사용 및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등</p> <p>○ 보조통장을 통해 수납한 원비 관리 소홀(사적용도 사용 등)</p> <p>입학시기나 CMS(자동이체) 미신청 학부모에 대해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유치원명의의 별도 계좌로 원비를 142,132,697원을 수납 받아 그 중 일부를 2014. 12. 8.부터 2017. 4. 17.까지 원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51,752,017원 사용하였음.</p> <p>또한, 원장이 2015. 1. 9. 선납부한 근로소득세 6,236,68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계좌로 이종으로 입금 받은 후 이에 대한 반환 시 개인계좌에서 반환하지 않고 원비수납계좌에서 유치원회계로 2015. 1. 22. ㊸6,236,680원을 반환하였는데, 결국 이종으로 지급받은 세금을 개인(원장)이 반환하지 않고 유치원 원비에서 대신 반환한 것으로서 이종지급 된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p> <p>○ 유치원명의의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개인 자금대여를 통한 원비보전</p> <p>사용하지 않는 유치원명의의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원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통장 및 현금으로 납부한 원비를 개인이 사용 후 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본 계</p>	<p>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7,259,43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좌 상으로 개인적인 자금대여 등을 통해 2015. 2. 27.부터 2015. 5. 29.까지 총86,795,000원을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유치원명의의 계좌를 개인용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면서 세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원장(○○○) 개인 계좌에서 유치원계좌로 수업료 등 입금</p> <p>보조통장으로 납부 받거나 현금으로 납부 받은 원비를 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원장 개인 명의계좌(국민, 우리은행)에서 유치원회계로 2015. 5. 1.부터 2017. 6. 5.까지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87,012,559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잔고 인출 후 개인용으로 사용</p> <p>2012. 10.부터 유치원명의의 계좌를 사학연금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적립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출건명을 ‘교원추가급여(○○○)’ 로 기재하는 등 실제 지출 내용과는 맞지 않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2014. 02. 이후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을 중단하면서 2014. 11. 24.자로 퇴직금 적립 잔액 64,912,960원을 유치원 수업료 계좌로 환입하였고, 이후 2015. 1. 30.부터 2015. 6. 29.까지 해당 계좌의 잔액 ㉠1,022,751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지출업무 부적정 등)</p> <p>○ 지출 업무 부적정</p> <p>2014. 3. 5.부터 2016. 9. 23.까지 주유비 명목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착오 지출이라 판단하여 2017. 2. 21부터 2017. 7. 14.까지 총 12회에 걸쳐 209,084,941원을 유치원회계로 보전 조치한 사실이 있음.</p> <p>한편, 2014. 3. 24.부터 2015. 7. 1까지 교재구입비 명목으로 ○○교육사에 총 5,640,4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착오 지출이라 판단하여 2017. 6. 1., 2017. 7. 3.에 4,192,400원을 자체 보전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체 보전 업무처리 시에 미 포함된 1,448,000원은 감사기간 중인 2017.9. 11.에 유치원 교비 통장에 전액 보전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4,011,20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자금이체 방법 부적정(“타CD” 거래)</p> <p>2014. 3. 7.부터 2016. 9. 23.까지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유치원과 거래하는 업체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CD” 거래 방법으로 총 178,338,400원(A+B+C)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착오 지출이라 판단하여 146,307,200원(A)을 자체 보전한 사실이 있음. 또한, “타CD” 거래 방법으로 지급한 내역 중 명절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28,020,000원(B)을 제외하고 2014. 07. 10.부터 2016. 09. 23.까지 원장 업무추진비외 6건 총 4,011,200원을 착오지출 하였다고 했으나 유치원회계에 여입(보전) 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p> <p>2014. 3. 18.부터 2015. 11. 26.까지 시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에 ○○상회 외 9개 업체와 거래한 듯이 서류를 첨부하였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여 총 5,015,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사학연금 대여상환금 지출 부적정</p> <p>○ 2016. 7. 25.부터 특정감사 수감기간인 2017. 9.까지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신청한 사학연금공단 생활자금 대여에 대한 월 상환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대신 납부해 온 사실이 있는데, 특정감사 기간 중 지적을 받고 2017. 9. 4. 기 상환액 993,320원을 유치원회계에 환입한 사실이 있음.</p>	주의 원장 1명	
<p>□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운용 부적정</p> <p>○ 2012. 2월부터 2016. 11월까지 현대해상 재산종합보험 외 2건의 보험료를 지출하였는데, 보험가입 당시 순수 보장보험료 외 적립금 성격의 적립보험료를 포함하여 가입하였으며 3건의 보험 중 1건에 대해서는 2015. 2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겸 원장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2건은 관할청의 지도 등으로 중도해지를 하였는데, 기존 만기환급금을 포함하여 2016. 12. 22.자 34,322,300원, 감사 기간 중 2017. 9. 5.자 3,988,077원을 추가로 환입하여 총 38,310,407원을 유치원 회계로 환입하였음. 그러나 만기환급형 보험의 중도 해지 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 적립 보</p>	경고 원장 1명 보전 971,57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혐료는 원래 보험가입 목적이 아닌 적금의 성격이므로 해지 시 적립보험료 적립액에 대한 손실 발생은 설립자(원장)가 이에 대한 보전을 하여야 함에도 적립보험료 납입액(만기환급액 포함) 대비 971,577원을 부족하게 환입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소유 타유치원의 교재비 지출</p> <p>○ 설립자 소유의 타유치원에서 구입한 다문화교재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고 ‘5, 6, 7세 다문화교육비(○○교육)’로 지출결의한 후 ○○교육(대표 ○○○)에 2016. 6. 24.자로 금2,955,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2,955,000원</p>	
<p>□ 급식 운영 부적정 등</p> <p>○ 영양사 급여 부적정 집행</p> <p>영양사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명목 없이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영양사 고유 업무가 아닌 데도 특정목적급식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급여와 요리실습활동을 이중으로 총 800,000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보존식 관리 소홀</p> <p>보존식에 적은 분량을 담아서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시료 채취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간식과 석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고, 보존식 기록지에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는 등 보존식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p> <p>○ 조리사의 건강진단 결과서 없음</p> <p>집단급식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조리사의 건강검진 결과서가 아닌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유치원 급식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p> <p>2014. 03 ~ 2017. 06.까지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2014. 03부터 2017. 06까지 유치원만의 양식에 날짜, 식단, 냉장고온도, 위생점검사항만 작성하고, 급식횟수, 급식단가, 급식인원, 식단 주재료, 검식확인을 기록하지 않아서 특정목적급식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특정목적급식비 부적정 지출</p>	<p>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23,684,300원</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설립자 자택 부근(○○ ○○)이나 서울 등의 지역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중식용 식자재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을 특정목적급식비로 총 32,558,237원(㉔)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과 무관한 식자재 구입</p> <p>유치원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미등록 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유치원 식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시각에 구입하는 등 교비총 6,305,680원(㉔)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 기관명 : 화성오산 동탄꿈의유치원 [감봉3월(병합) / 보전조치 : 22,479,45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2014~2017학년도 6월까지 경기유아교육 운영에 명시된 교육과정 이외의 형태(특별활동시간)로 영어 특성화프로그램을 14:00부터 16:00까지 편성하였으며, 해당 방과후 과정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LCI어학원(설립자의 쪽 운영)에 위탁하여 별도의 수익자부담금으로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 운영함.</p>	경고 원장 1명	
<p>□ 방과후 과정 학급정원 부적정</p> <p>○ 방과후 과정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규칙(근거 유 13-06호, 2013.01.25. 규칙변경신청)에 20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 만3세 방과후 원아 최대 28명, 만4세 방과후 원아 최대 26명, 만5세 방과후 원아 최대 32명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함.</p>	경고 원장 1명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개인카드로 집행 후 개인에게 입금)</p> <p>○ 행정교사(설립자의 아들) 개인카드 사용 후 행정교사에게 입금</p> <p>2014. 8. 18.부터 2017. 1. 9.까지 유치원과 거래한 업체의 대표 계좌에 입금하거나 유치원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정교사(설립자의 아들)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행정교사(설립자의 아들) 개인계좌(신한)로 총 76회에 걸쳐 14,314,171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체육보조교사 개인카드 사용 후 체육보조교사에게 입금</p>	감봉1월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통학차량수리비, 원아치료비 등 각종 운영비 집행 시 유치원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놓고 2014.3.24.부터 2016.10.18.까지 총368건 41,378,550원을 수영강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설립자 개인카드 사용 또는 현금 지급 후 설립자에게 입금</p> <p>2014. 5. 15.부터 2015. 8. 21.까지 유치원과 거래한 업체의 대표 계좌에 입금하거나 유치원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설립자의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설립자 개인계좌로 총 3회에 걸쳐 3,303,9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등)</p>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p> <p>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집행하였으며, 2014. 03. 03.부터 2017. 6. 30.까지 현금출납부상 원아원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상사 외 20개 업체에게 총 1,900,125,371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상사 외 20개 업체에 대하여 총 1,171,906,200원(㉡)만을 신고하여 차액 총 598,970,771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p> <p>○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p> <p>2014. 3. 5.부터 2014. 12. 29.까지 식재료구입비 명목으로 ○○상회에 총 84회에 걸쳐 109,685,000원을 집행한 내역 중 해당 사업자가 2014. 12. 31.에 폐업하여 동일사업명이더라도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5.부터 2015. 12. 3.까지 총 110회에 걸쳐 78,995,500원을 폐업한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사적사용)</p> <p>○ 2014. 6. 4.부터 2014. 12. 10.까지 유치원 교직원이나 아닌 자의 경조사비를 총 3회에 걸쳐 1,000,000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2015. 5. 13.부터 2016. 10. 18.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7,159,78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지 후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납부하여 총 3,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2014.3.25.부터 2014.9.26.까지 유치원 교비계좌에서 설립자 개인 휴대폰 요금을 총 5회에 걸쳐 459,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 2015. 8. 7.부터 2015. 8. 8.까지 교육대표자정책최고위과정 연수를 교육대표자인 원장이 아닌 설립자 겸 행정실장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총 2회에 걸쳐 3,2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p> <p>○ 유치원 교비 통장에서 2014. 3. 24.부터 2016. 6. 21.까지 임의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회비로 총 5건, 4,73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4,732,000원</p>	
<p><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학습장 집행 부적정(미등록 사업자와 거래)</p> <p>○ 2014. 6. 10.부터 2015. 9. 16.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미등록 사업자(설립자의 남편, 현 유치원 행정실장)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아들의 자연체험학습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34,97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input type="checkbox"/> 현금징수 후 세입예산 미편성 등</p> <p>○ 2015~2016학년도 중 원아의 생활 및 졸업사진, 학예 발표회 DVD 구매를 원할 경우 현금으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였으며, 2016. 2. 12.부터 2017. 2. 16.까지 ○○스튜디오 외 1개 업체로 총 4건 48,405,400원을 지출함.</p> <p>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납부한 현금을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아 결산서에도 누락시켰고, 학부모가 제출한 구입 신청서와 현금을 그대로 업체에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사유로 원아별 구매내역 등 정산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감사과정에서 위 지출 건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거래일자의 수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하면서 특정 감사 기간인 2017. 9. 19.자로 승인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만기환급형 보험 운용 부적정</p> <p>○ 감사시점인 2017. 9월 기준으로 삼성생명 등 총 3건</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의 만기환급형 보험을 납입·유지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목적 변경사실과 변경된 적립금 사용계획서 등을 사전에 관할청에 제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NEW에이스 저축보험)과 한화생명(내일&NEW적립) 보험에 대하여 2014년 재산관리 실태 조사 시 보험가입목적은 각각 퇴직적립금과 시설보수충당금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결산서 상 보험가입 현황을 제출하면서 실제 보험기간과 상이하게 보험기간을 작성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감사기간 중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적립금 사용 자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중도해지를 통해 시설개보수, 노후차량 및 교실비품 교체로 1,183,000,000원을 사용할 계획임을 소명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에서 벌금 납부 부적정</p> <p>○ 유치원 입구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부지에 유치원 원아들의 정서함양 등을 사유로 정원을 설치함. 이와 관련하여 ○○시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후 2014. 12. 22. ○○경찰청으로부터 가납벌과 금납부명령(○○지법 2014 고약 19***) 통보를 받고 2014. 12. 29. 3,00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하였으며, 주차장의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설계수수료 1,100,000원(㉡)을 2016. 1. 20.자로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4,100,000원</p>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과다 지급</p> <p>○ 설립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교직원 채용 시 자격 등 형식 요건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도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른 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 교직원인 원장(설립자의 자) 기본급 월 이천만원 및 행정실장(설립자 및 설립자의 夫) 기본급 월 천 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p> <p>○ 목적 외 예산 집행</p> <p>- 특정목적 급식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급식전담직원에게만 집행해야 하고 급식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에서 전액 집행이 불가함에도 방과후</p>	<p>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5,273,670원</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보조교사로 채용한 직원을 영양사 업무도 겸직하게 하여 총 4,100,000원(㉠)을 급식경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특정목적급식비를 인건비, 급식비(중식)와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운영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173,67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보존식 관리 부적정</p> <p>보존식을 -18° C 이하로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 C로 보존하였으며,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을 보존식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존식품을 누락하였으며, 기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p> <p>- 식단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03 ~ 2017. 06.까지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두부, 콩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급식일지에 급식횟수와 급식단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급식일지와 발주 및 검수일지에 돈 불고기를 3,000kg로 기록하여 마치 중식용으로 1인당 약 5.1kg을 제공, 쇠고기 국거리를 1,200kg로 기록하여 1인당 약 2kg을 제공하는 것처럼 육류의 수량 부정확하게 기록하여 특정목적급식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 기관명 : 수원 선덕유치원 [정직2월(병합) / 보전조치 : 130,841,24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유치원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9:00부터 13:00 또는 14:00까지)에 특성화 활동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외부업체와 강사 파견 계약을 맺고 체육·영어·다문화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원장 연수비 등 지급 부적정)</p> <p>○ 원장 연수비 지급 부적정</p> <p>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주관하여 2015.10.4.~10.5. 1박2일로 제주도를 다녀오는 비용 170,000원과 2016.11.24.~11.26. 2박3일로 일본을 다녀오는 비용 1,00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원장 휴대폰(010-67**-3***)요금 납부 부적정</p> <p>원장 개인 휴대폰요금을 2014. 4. 15.부터 2017. 2. 27.까지 총 35건 5,511,6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6,681,600원</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사립유치원연합회비 등 지급 부적정)</p> <p>○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지급 부적정</p> <p>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지역 유치원 원장들의 유아교육 연구회비 및 월드컵예선경기관람 축구입장권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2014. 3. 5.부터 2017. 3. 7.까지 총 9건 5,144,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연구회비 등 지급 부적정</p> <p>2014. 3. 24.부터 2016. 2. 12.까지 임의단체인 ○○모, ○○연구회, ○○연구회의 회비로 총 39건, 10,05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5,197,000원</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기부금 등 지급 부적정)</p> <p>○ 기부금 지급 부적정</p> <p>기부금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교육원 대표 ○○○목사가 운영하는 ○○밥상 공동체 노숙자시설(주소: ○○시 ○○구 ○○동 3가 56)에 2014.5.12.부터 2015.4.22.까지 총 12건 1,150,000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와 입출금거래내역만 첨부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p> <p>유치원교직원이 아닌 타 유치원 원장의 딸 결혼 축의금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2014.4.5.부터 2017.2.4.까지 총 9건 600,500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와 입출금거래내역만 첨부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회분 구입비 등 지급 부적정</p> <p>원장이 소속되어있는 연구회 회원(타 유치원 원장)의 유치원 발표회 기념선물 명목으로 화분 등을 구입하고 그 구입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800,500원</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지출증빙서류 미비 등)</p> <p>○ 각종 선물구입비 등 지출증빙 미비</p> <p>교사 선물 등의 명목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확인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출하거나,</p>	<p>감봉1월 원장 1명</p> <p>보전 26,448,900원</p>	

<p>총액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첨부하여 구매품목, 수량, 단가 등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2014.5.29.부터 2017.5.15.까지 총 75건 20,803,700원(㉠ 품목부적정: 66,900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교재 구입비 등 지출증빙 미비</p> <p>2015. 4. 9.부터 2016. 2. 12.까지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방과후 미술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에게 총 36회에 걸쳐 26,382,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지출업무 부적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등)</p> <p>○ 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집행하였으며, 2014. 03. 03.부터 2017. 6. 30.까지 현금출납부 상 원아 원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아 외 13개 업체에게 총 456,445,70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피아 외 13개 업체에 대하여 총 104,626,500원(㉣)만을 신고하여 차액 총 351,819,2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원천징수 미이행</p> <p>○ 교직원 급여 원천징수 미이행</p> <p>2014. 3. 1.부터 2017. 6. 30.까지 교직원 ○○○○(설립자의 남편)외 5명의 급여 총 252,160,000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p> <p>2014. 7. 10.부터 2017. 2. 13.까지 방과후 강사 ○○○○ 및 ○○○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 24,910,000원 지급 시에,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미이행</p> <p>○ 2017. 8. 7.부터 감사시점인 2017. 10월까지 경기70바 **** 뉴카운티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 온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p>	
<p>□ 우유급식비 세입예산 미편성</p> <p>○ 2015학년도 우유급식을 실시하면서 우유급식비 수납을 위한 유치원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학부모에게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학부모에게 수납 받은 금14,130,000원을 주된 회계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직접 지출처리하면서 우유급식비에 대한 수납과 지출내역을 현금출납부에 누락시켰으며 결산서 작성 시에도 누락시켜 유치원 세입·세출예산 관</p>	<p>경고 원장 1명</p>	

<p>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만기환급형 보험 운영 부적정 등</p> <p>○ 재난·재해 및 사고 대비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한도는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 정기적금의 성격으로 본래 보험 목적 외 과다지출이므로 동 지침의 시행 시점부터 만기환급형 보험의 신규 가입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24.부터 2016. 1. 18.까지 ‘한화생명 플러스저축 만기환급형’ 외 3건의 만기환급형 보험을 신규 가입한 사실이 있음. 보험가입 사실과 만기 시의 사용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보험가입 현황에도 누락하였으며, 이후 관할청에서 만기환급형 보험 관련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2016. 8월, 2017. 1월, 2017. 5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임의로 누락시켰고, 특정감사 실시 전 2017. 10. 12.자로 보험가입 사항을 추가 기재한 수정 결산서(2014~2016학년도)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만기환급형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적립보험료 분의 납입액과 중도해지 환급액의 비교 시 6,614,582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 76,226,582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정직1월 원장 1명</p> <p>보전 76,226,580원</p>	
<p>□ 급식 운영 부적정 등</p> <p>○ 영양사 고용 부적정</p> <p>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키즈 소속영양사를 유치원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영양사의 업무인 식자재의 구매와 검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03.부터 2017.06까지 유치원의 식단표 및 급식일지에 부식만 기재하고 주식을 명시하지 않는 등 영양사로서 준수해야 할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인건비 지출 부적정</p> <p>특정목적급식비에서 인건비는 급식전담직원에만 지출하고 경직하는 경우 전액집행이 불가함에도 종일반 교사인 ○○○이 조리보조를 했다는 명목으로 금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p> <p>○ 보존식 관리 소홀</p> <p>유치원생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종류별로 100g 이상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식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자체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식과 보존식을 구별하여 관리하면서 144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100g 이상’ 이 아니라 ‘유치원생 1인분’ 의 적은 분량을 보존식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시료 채취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등 보존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p>	<p>감봉 1월 원장 1명</p> <p>5,486,660원</p>	

<p>유치원 당일 식단에 사용한 주요 식자재를 급식일지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구매·검수서의 물품대로만 급식일지를 작성하여 2017년 4월 4일 구매한 쌀 40kg을 하루에 모두 소비하는 것처럼 급식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급식일지와 식자재 구매·검수서를 3명이 기간을 맡아서 다른 필체로 원장 강희정의 사인을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p> <p>○ 세목과 불일치하는 부적정 지출</p> <p>중식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특정목적급식비를 급식일지 및 식자재 구매·검수에 없는 식자재를 휴일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지출하거나, 구매내역을 알 수 없는 식자재 구입에 금3,239,14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방과후 특정목적급식비 부적정 지출</p> <p>방과후특정목적간식비나 공동운영비에서 급식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 하였으나, 휴일 구매 및 간식식단표와 불일치 그리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식자재 구매 등 총 1,747,52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	--	--

□ 기관명 : 평택 평택파랑새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38,763,9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유치원 명의 계좌 관리 부적정 등</p> <p>○ 2014. 3. 3.부터 2014. 4. 22.까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한 식음료와 잡화구입 건 등의 사후 지출 시 유치원 회계 계좌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유치원 명의의 타 계좌로 총4,815,679원을 이체하였고, 2014. 4. 25.자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7,788,841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고, 특정감사 기간 중 위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017. 11. 2. 금7,788,841원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보전조치 하였음을 소명하였는데,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유치원 계좌를 개인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 유치원 회계 예·결산 업무 처리 부적정</p> <p>○ 2014. 3. 3.부터 2014. 3. 26.까지 유치원명의의 별도 계좌로 원복비 4,720,000원을 납입받은 후 2014. 4. 25. 자 4,7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복납품 업체인 ○○키즈(대표 ○○○)로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납입한 원복대금의 수납과 지출 내역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미편성하여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결의서, 결산내역에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별도 계좌에서 2014. 4. 7. ㉠30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고, 2014. 5. 30. 계좌해지에 따른 잔액 ㉡</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604,00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304,005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유치원 세입예산에 미편성하는 등 총 604,005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상 유치원의 예·결산 자료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탑재하도록 되어있으나, 2017학년도 예산서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금액보다 980,000원이 과소 기재된 예산서를 정보공시 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2014~2016학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현금출납부 상의 예산 (목)별 실제 지출금액과의 비교 시 일부 예산 항목의 경우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집행금액과 상이하게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결산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지출증빙서류 관리 소홀 ○ 2014년 3월분 지출증빙서 상 증빙서류 분실을 사유로 총 291건, 110,963,819원의 지출 건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누락시키고 지출결의서 날장으로만 편철하였고, 2016년 2월분 지출증빙서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사용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 100여장의 날장 증빙서류를 투명 비닐에 담아 첨부시키는 등 유치원 회계 지출증빙서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권한 없는 자의 결재) ○ 2015-2017학년도 현금출납부,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수입결의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지출일계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의 원장 결재인 란에 원장 ○○○가 아닌 2015. 5. 1. 퇴직한 ○○○(2015. 5. 1. 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 재직 중)의 도장을 찍고 처리하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 가설건축물 미신고 ○ 2014. 10월 유치원 건물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설치비 4,51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컨테이너를 창고 및 분리수거 장소로 이용하면서 건축법 상의 가설건축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p>	
<p>□ 급식 운영 부적정 ○ 조리실 운영 부적정 식자재 구매·검수서, 급식일지, 보존식 관리 등 조리실 운영 전반에 대해 조리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없는 조리보조(○○○)에게 맡긴 사실이 있으며, ○○○ 조리사의 경우 2014~2015학년도까지만 조리사로 근무하게 하고, 2016</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6,603,34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학년도 이후에는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게 하여 2016년부터 조리실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유자격자가 없는 상태로 조리실을 운영하여 안전과 위생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 보존식 관리 부적정 현장점검 시 중식 식단표 대로 보존식을 관리하지 않았고 오후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았음. 또한 음식을 종류별로 100g 이상씩 담지도 않았고, 보존식 기록지에 폐기일과 반입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등 보존식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 및 회계 관리 불투명 2014. 3월부터 2017. 6월까지 식단표에 일부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급식일지에 급식횟수와 급식단가, 식자재의 수량을 기록하지 않아서 일일급식비 지출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식자재는 입고된 당일의 식자재구매·검수서에 작성해야 하는데도 주문한 날 식자재 구매·검수서에 작성하는 등 식자재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식자재비 지출의 회계 관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 식자재 구매량 부적정 식자재 납품 거래명세서와 급식일지의 식단을 바탕으로 급식인원 대비 육류 등의 식자재 구입 내역(수량)을 검토 시 유치원생 1인당 단백질 공급량을 권장영양 섭취 기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제공하여 유치원생의 영양관리를 소홀히 하였음.</p> <p>○ 교직원 중식비 징수 부적정 2017. 3월부터 2017. 6월 동안 급식지원금 및 원아 수익자 부담급식비로 교직원 급식비 금6,984,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용도 불분명의 식자재비 집행 2014. 3. 29.부터 2017. 6. 27.까지 법정 서류인 식자재구매·검수서와 급식일지로 확인 불가능한 식자재 구입으로 금 6,603,342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용도 불분명한 식자재비 집행액 6,603,340원 보전조치</p>		
<p>□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사학연금 미가입 교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마련을 목</p>	<p>감봉1월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적으로 2014. 2. 21.부터 2017. 2. 21.까지 적립금 계좌에 적금형태로 매월 150만원씩 총 36회, 54,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관할청에 예·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도 퇴직금 적립현황을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2017. 2. 21. 위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면서 적립금액 55,936,815원(만기 이자 포함)을 유치원 회계 계좌로 이체한 후 별도 관리 등의 조치 없이 교직원 급여 지급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여 당초 적립 목적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기부금 등 지급 부적정) ○ 굿네이버스 기부금, 비전동체육회후원금 등 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단체에 기부금 및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교직원이 아닌 자의 경조사비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증빙서류 없이 2014. 3. 14.부터 2017. 6. 12.까지 총 26건 5,505,6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5,506,650원</p>	
<p>□ 유치원 지출업무 부적정(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 2014. 3. 3.부터 2017. 6. 30.까지 현금출납부 상 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에듀○○키즈 외 24개 업체에게 총 1,143,582,138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3.부터 2017. 5. 25.까지 잡초제거·잔디관리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氏에게 총 9,3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한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국세청 통보</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개인카드 사용 후 원장에게 지급 등) ○ 유치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량유류비 등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유치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여러 건 첨부해놓고 원장 ○○○ 계좌로 지급하였는데</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5,277,75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의 퇴직일(2015.5.1.) 이후에도 102건 5,277,75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10. 6.부터 2015. 9. 11.까지 총 531건, 46,362,387원을 지급하였으며, 원장 ○○○계좌로 2015. 6. 17.부터 2017. 2. 2.까지 총 329건, 23,725,128원을 지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전 원장 ○○○에게 (퇴직일 이후)지급된 5,277,750원 보전조치</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절(선물구입비 지급 부적절) ○ 교사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서울, 충남 아산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영수증을 여러 건 첨부해놓거나 증빙서류 없이 2014.3.25.부터 2016.12.14.까지 총 55건 6,463,98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감봉1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6,463,980원</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절(사적사용 등) ○ 사적 사용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치원 회계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인 항공권, 면세점 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총332건, 14,309,188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함. ○ 현금 인출 등 2014. 6. 3.부터 2017. 6. 29.까지 교직원 명절 상여금 및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86,569,870원을 집행 시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감봉3월 원장 1명 감봉3월 원장 1명 - 현 ○○유치원 원장 보전 14,309,180원</p>	

기관명 : 평택 아이온세상유치원 [정직1월(병합) / 보전조치 : 64,088,1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절 ○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소홀 2014. 3월부터 2017. 6월까지 일부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2016~2017년에 식자재 납품 업체인 ○○푸드의 “매출처검수용” 검수서를 유치원의 식자재구매·검수서로 대체하였으며, 구매·검수서 상에 유제품, 청과 등</p>	<p>경고 원장 1명</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을 누락하여 식자재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보존식 관리 부적정 식단표대로 보존식을 관리하지 않았고, 오후 간식은 누락하였으며, 100g 이상씩 담지도 않았으며, 보존식 기록지의 양식을 따르지 않아서 채취일시, 냉동고온도, 폐기일시, 채취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보존식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2014. 3월부터 2017. 6월까지 식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급식비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여 급식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교직원 급식비 집행 부적정 2017. 3월부터 2017. 6월까지 급식지원금 및 원아 수익자부담급식비로 교직원 급식비 금3,6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중식에 기준 이상 고칼로리 식단 제공 2014. 3월부터 2017. 6월까지 중식 식단 상 열량(칼로리)을 450kcal~612kcal로 구성하였는데, 만3~5세 유아의 일일 열량(칼로리) 섭취기준 1,400kcal의 1/3을 초과하여 균형 있는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특성화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2015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외부업체와 강사 파견 계약을 맺고 다문화교육(영어-○○○○)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설립자 겸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부적정</p> <p>○ 설립자 겸 前 원장(2008. 5. 26.부터 2011. 5. 31.까지) ○○○을 교사로 채용(2011. 6. 1.부터 현재까지)하여 관할청에 임용 보고하였으나, ○○○은 유치원 교사 재직기간 중 유치원과 동일한 주소지의 (주)○○(2017. 3. 31. 폐업)의 대표이사(2011. 10. 11.부터 2017. 3. 31.까지)로, 유치원 바로 옆에 소재한 ○○○어학원(현재 휴업 중)의 원장(2012. 11. 22.부터 현재까지) 및 ○○○어린이집의 설립자(대표)(2012. 11. 16.부터 현재까지)로 재직하는 사실이 있는데, 유치원 교원의 경우 관련 법령 상 영리업무 종사와 겸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사대상 기간인</p>	감봉1월 원장 1명	

시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2014. 3월부터 2017. 6월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의 급여 및 수당(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총 193,237,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사항의 해소방안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후 이행토록 조치</p>		
<p>□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각종 회비 및 경조사비 등 지급 부적정)</p> <p>○ 각종 회비 및 후원금 지급 부적정</p> <p>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중·고 총동문회비, ○○시 당구연맹비, 사립유치원연합회비, 후원금 등을 증빙서류 없이 2014. 3. 19.부터 2017. 6. 26.까지 총 31건 ㉠9,867,8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p> <p>유치원 교직원이 아닌 타 유치원(지역 내 유치원 연합회 소속 유치원)의 원장 경조사비를 증빙서류 없이 2015.5.11. 총 2건 ㉡2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0,067,800원</p>	
<p>□ 유치원 회계지출 업무 부적정(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p>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p> <p>일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거나, 거래사업자의 대표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4. 3. 3.부터 2017. 6. 30.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및 식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클럽 외 28개 업체에게 총 1,707,944,359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강사료 소득세·주민세 미납부</p> <p>2014. 3월부터 ~ 2017. 6월까지 발레 등의 특성화과정 강사료 명목으로 총 79,805,25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국세청 통보</p>	
<p>□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 등)</p> <p>○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p> <p>가. 현금 인출</p>	<p>감봉3월 원장 1명</p> <p>보전 43,294,60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2014. 6. 3.부터 2017. 6. 29.까지 교사 상여금과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92,154,000원 집행하면서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 후 지급하여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p> <p>나. 원장에게 지급</p> <p>2014. 3. 3.부터 2016. 4. 4.까지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원장(○○○)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2399회, 242,574,715원을 집행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p> <p>○ 부당 집행</p> <p>가. ○○○에게 지급</p> <p>2014. 7. 9.부터 2016. 6. 15.까지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주)○○교육과 거래하거나 차량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으나, 지출결의서류에는 입금증 외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거래업체 대표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계좌로 총 66회, ㉠43,044,6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나. ○○어린이집(동일 설립자) 물품 구입</p> <p>2014. 10. 13. 밥술구입비 명목으로 □□주방냉동산업과 ㉡250,000원을 거래하였으나,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어린이집’으로 표기되어 있어 설립자 소유의 어린이집의 물품 구입비용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p>		
<p>□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카드 대금 납부</p> <p>○ 2014. 3. 5.부터 2015. 3. 11.까지 원장 ○○○ 개인 명의의 삼성카드 외 1개의 카드대금 총 15,034,349원을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유치원 원비 수납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결제를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카드대금 인출액 15,034,349원 중 환불액 2,040,580원을 제외한 12,993,769원에 대하여 2015. 2. 16. 12,137,532원을 운영비 계좌로, 2015. 4. 30. 856,237원을 원비 수납 계좌로 각각 입금하여 부적정하게 인출한 카드대금 총 12,993,769원을 자체 보전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유치원 회계에서 토지구입비 지출 부적정</p>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2014. 3. 7. 유치원(○○시 ○○동 482-6번지)에 인접한 ○○시 ○○동 482-14번지(15㎡) 토지매입비로 9,353,7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토지는 설립자 ○○○ 소유였으나 2004년 경 ○○시의 소방도로 계획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어 ○○시로 소유권 이전(소유권 이전일 : 2004. 4. 14.)이 되었고, 이후 소방도로 계획이 취소되면서 2014. 3. 7.자로 설립자 ○○○이 ○○시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인데, 비록 위 토지를 매입하여 유치원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토지매입 시 설립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재산(토지) 취득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유치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보전 9,353,700원</p>	
<p><input type="checkbox"/> 교원 연가 초과 사용</p> <p>○ 원장 ○○○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연간 21일임에도 불구하고 2016. 4. 14.부터 2016. 12. 30.까지 26일간 연가를 사용하여 법정 연가일수 대비 5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초과 사용한 연가일수 5일분 1,372,000원 보전조치</p>	<p>경고 원장 1명</p> <p>보전 1,372,000원</p>	
<p><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근로 계약 부적정</p> <p>○ ○○노무법인(대표 ○○○, 11회에 걸쳐 1,089,000원 자문료 지급)의 검토를 받아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교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하면서 설립자 ○○○과 원장 ○○○을 제외한 교직원(교원)들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서약서를 징구하였는데 서약서에는 퇴직 후 업무상 비밀을 누설,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 외에 “퇴사 후 1년 이내에 ○○지역에 동종업종을 개시하거나, 동종업계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약도 하였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p>	<p>경고 원장 1명</p>	
<p><input type="checkbox"/> 설립자 개인계좌로 원비 수납 부적정</p> <p>○ 원비 납부 안내문 상으로 유치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설립자 ○○○ 개인 명의의 계좌로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신입생의 경우 스쿨뱅킹(원비 자동 이체)을 신청하</p>	<p>감봉1월 원장 1명</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지 않은 관계로 개인계좌로 먼저 납부 받아 유치원 계좌로 이체 처리한 것임을 소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4. 3. 3.부터 2017. 5. 25.까지 총 49회, 금 195,069,800원을 설립자 개인계좌에서 유치원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 유치원 원비 수납 시 유치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납·정산하여 투명한 세입예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개인 명의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유치원 회계 세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 기관명 : 성남 서판교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3,745,74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지급 부적정 ○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로 2014. 3. 28.부터 2017. 4. 5.까지 총 2건 1,7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보전 1,700,000원</p>	
<p>□ 차입금 및 상환반환금 운영 부적정 ○ 유치원의 차입금은 유아학비 지원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재원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당해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하나, 유치원 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수시로 설립자의 개인자금을 차입하면서 연도별 차입 금액과 상환(반환)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차입금 및 상환(반환)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함.</p>	<p>경고 원장 1명</p>	
<p>□ 교직원 근로계약 및 급여 업무 부적정 ○ 교직원 급여 지급 시 조리사 ○○○의 경우 2014학년도 근로계약서를, 조리사 ○○○의 경우 2015학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립자 겸 사무실장 ○○○, 행정직 및 운전직 ○○○, 차량기사 ○○○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 대장상의 급여지급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상이한 등 근로계약 및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p>	
<p>□ 설립자를 사무실장 겸 영양사로 채용 후 급여 지급 부적정 등 ○ 설립자 ○○○를 사무실장으로 채용 후 영양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영양사 업무를 겸직하게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실장으로만 되어있을 뿐 영양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별도의 영양사 근로계약서도 없음에도,</p>	<p>감봉1월 원장 1명 국세청 통보</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행정실장 급여와는 별도로 영양사 급여 명목으로 2014. 3. 26.부터 2017. 2. 20.까지 총 87,203,5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p> <p>또한, 급여대장상에는 월 급여액에 따른 정당한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실제 급여액보다 127,205,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회계 업무 부적정(설립자에게 대금 지급)</p> <p>○ 부식 구입, 차량유류비 등의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유치원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당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첨부해놓고 대금을 설립자 겸 사무실장에게 2014. 3. 2.부터 2017. 6. 14.까지 총 156건 29,233,237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p>	경고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결산업무 처리 부적정</p> <p>○ 특정감사 시작 시 2014~2016학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감사장에 별도 제출하였는데, 기존 관할청에 제출한 결산서와 비교 시 상당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당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결산서에는 유치원에서 보유중인 7개 계좌 중 3개 계좌(입학금 계좌 1개, 시청 냉난방비 계좌 2개)의 입·출금 내역을 업무착오로 결산서에 미반영하였으며, 설립자 개인자금 차입·상환 내역 또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결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p>	감봉1월 원장 1명	
<p><input type="checkbox"/> 스마트교육장비 등 구매 부적정</p> <p>○ 2014. 4. 24. (주)○○○○○○○○연구소(대표 ○○)와 ‘스마트 교육 공급 계약’ (계약금액 148,240,000원)을 체결하고 학생용 슬레이트 PC 등의 장비와 교육용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는데, 관련 대금은 ○○캐피탈(현 ○○○캐피탈)의 리스계약을 통해 캐피탈에서 (주)○○○○○○○○연구소로 대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유치원에서는 캐피탈로 24개월 간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14. 5. 26.부터 2016. 1. 5.까지 총 23회, 금165,880,355원을 ○○(○○○)캐피탈로 지급하였는데, 특정감사 소명 시 설립자 겸 사무실장인 ○○○는 원아수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치원 운영비 조달을 위해 본인의 개인자금을 수시로 차입하고 본인과 일부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원아들의 교육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려운 고가의</p>	감봉1월 원장 1명	

지 적 사 항	계 분 요 구	비 고
<p>교육장비(프로그램)를 리스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계약금액 외의 추가적인 이자 17,640,355원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유치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또한, 특정감사 수감 시 제출한 스마트교육장비 구매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와 2016. 7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지도 시 복사하여 보관 중인 증빙서 간 비교 시 양 물건명세서 상의 세부 품목 내역과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행정지도 당시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반면, 특정감사 수감 시에는 2016. 1. 5.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결과 특정감사 준비기간인 2017. 11. 13. 세무서에 정상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지출증빙서류의 정당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함.</p> <p>※본 지적사항에 대해 설립자 겸 사무실장 ○○○는 유치원 발전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 결정이었고 캐피탈 리스계약을 통한 정상적인 이자납부 사항임을 주장하며 확인서 날인을 거부함.</p>		
<p>□ 어학원 계좌 미제출</p> <p>○ 2015. 10월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시 설립자 개인명의의 계좌(예금주 ○○○, 설립자 소유의 어학원비 수납용)로 유치원 교통비를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1. 2. 2,000,000원, 2015. 11. 17. 2,560,000원씩 총 4,560,000원을 유치원회계에 보전한 사실이 있는데, 특정감사 시 설립자 개인명의의 계좌로 추가적인 원비 징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교통비 별도 수납 건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점만을 소명하면서 해당 계좌를 미제출하였음.</p>	정직1월 원장 1명	
<p>□ 유치원 교구 구비 부적정</p> <p>○ 유치원 영역별 특성(쌓기, 역할, 언어, 수조작, 과학, 미술, 음률, 운동)에 따른 필수 교구를 구비하였다고 소명(2017. 12. 6.)하였으나 현장 점검 결과(2017. 12. 11.) 영역별 필수 교구 총 60개 중 26개만 구비하여 다수의 필수 교구를 구비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경고 원장 1명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p> <p>○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p> <p>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 등을</p>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첨부하는 등 2014. 3. 3.부터 2017. 6. 30.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교육 외 15개 업체에게 총 416,131,25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총액은 13,759,350원(㉡)으로, 차액 402,371,900원(㉢=㉠-㉡)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정당채주 아닌 자에게 지급</p> <p>체육수업료 명목으로 ○○샘(대표자: ○○○)과 거래하면서 거래업체의 대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샘 대표자 남편)개인 계좌로 13건, 10,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짐(대표자: ○○○)과 거래하면서 거래업체의 대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짐 대표자 자녀) 개인계좌로 1건, 840,000원을 지급하여, 총 14건, 11,8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p>		
<p>□ 급식 운영 부적정</p> <p>○ 급식 운영 관리 소홀</p> <p>설립자 겸 영양사 ○○○가 출국하여 유치원에 부재중인 시기(2014. 7. 28. ~ 2014. 8. 11./2015. 1. 8. ~ 2015. 1. 12.)에도 식자재구매·검수서와 급식일지의 확인자란에 “○○○”의 도장 또는 사인을 날인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설 명절 연휴에 구매한 식자재를 식자재구매·검수서에 작성하는 등 급식 서류를 소홀히 관리함. 또한 식자재구매·검수서를 작성하고 급식으로 제공하였음에도 급식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치원급식일지의 작성자란 “○○○”과 확인자란 “○○○”를 최소 3명 이상이 서로 다른 필체로 사인하여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급식 관련 서류에는 2014~2017년까지 매년 교직원수가 10명인데도 급식일지에는 11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유치원 급식비 지원액은 2014~2015년에는 2,400원, 2016년에는 2,460원인데도 유치원의 급식일지에는 2014~2016년까지 2,000원으로 기록하여 급식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식단표와 조리실에 비치하는 원산지 표기 서류에 두부·오징어·명태살 등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급식 위생 관리 소홀(식재료 구매)</p>	<p>감봉1월 원장 1명</p> <p>보전 2,045,740원</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p>식자재를 매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1회 등 간헐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식자재의 신선도를 떨어트려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p>○ 급식 지원 관리 소홀</p> <p>특정목적급식비 급식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를 수령 후 이를 교비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수익자부담급식비, 방과후급식비 등 급식 관련 모든 금액을 교비계좌에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교비·특정목적급식비·수익자부담급식비·방과후 간식비 간 지출내역을 구분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목적급식비 계정으로 빵, 우유, 과자 등 오전간식비나 방과후 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특히 급식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고서도 교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특정목적급식비·수익자부담급식비·방과후 간식비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급식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급식비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의 비중으로 지출하고 자치단체 급식보조금은 가능한 전액 식품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2014~2015년에는 급식식품비를 자치단체 급식보조금보다 적게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식식품비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지출(2014년 40.53%, 2015년 52.65%)하여 급식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있음. 한편 2017학년도에는 급식지원금이나 수익자부담급식비로 교직원 급식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직원 급식비를 무상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유치원의 급식 관련 서류에 교직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장 ○○○에게 2014. 3 ~ 2017. 6까지 중식비 금 1,648,800원을 부적정하게 무상 지원한 사실이 있음.</p> <p>※2017년도 중식비 무상지원분(○○○) ㉠금196,800원 보전 조치</p> <p>또한 급식과 무관한 품목 구입에 특정목적급식비 ㉡금 574,9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휴일에 구매하면서도 식자재구매·검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급식일지의 식단에 없는 등 원아의 급식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식자재 구입에 특정목적급식비 ㉢금1,274,046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보전조치 합계 : 2,045,740원(㉠+㉡+㉢)		

□ 기관명 : 군포의왕 숲속해아뜰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17,291,75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7년 6월까지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287건 627,319,3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교비 부정 사용 ○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교육 목적 외 사용,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6,715,486원을 부정 사용하였으며, 수익자 부담금 908,780원을 예산 목적 외 물품 구입비로 집행하는 등 총 7,623,966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7,623,960원	
<input type="checkbox"/> 적립형 보험 납입 금지 위반 및 예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년부터 유치원은 신규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고 예결산서 제출시 보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결산서의 적립금 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2.10.2.~2015.10.2.까지 18,291,924원을 불입하였고, 이 중 17,450,213원을 만기 수령하여 841,711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013.5.9.부터 3년납 5년만기 적립형보험에 2017.9 현재까지 총 36회 108,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보전 101,641,71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다례체험, 영어, 체육, 음악 등의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였고, 원아 1인당 1일 1개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원아 1인당 1일 2개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지출 업무 소홀 ○ 2014~2016학년도까지 설립자와 배우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한 후 개인 계좌로 총 17,009,180원을 입금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감봉1월 원장 1명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 수익자부담금 징수 시 교비 계좌로 수납하거나 현금 수납 시에는 즉시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숲속해아 돌유치원은 2015~2016학년도 입학금, 방과후 교육비 등의 수납 현금을 교비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않고 무단 보관 후 교비 계좌로 재 입금 처리하였고, 2017.1.13.~3.31까지 수납된 입학금을 무단 보관 후 회계연도가 개시된 2017.3.3.자 현금출납부에 기재 하는 등 총 77,725,001원의 세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 조치불요(퇴직)</p>	
<p>□ 허위계약서 작성 및 재산 관리 부적정</p> <p>○ 통학차량의 매매 계약 시 실제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자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매매 금액 6,500,000원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으며, 2015.5.9. 유치원 소유 통학차량 경기 71고 ****를 대가 없이 부적절하게 매매한 사실이 있음.</p>	<p>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6,500,000원</p>	
<p>□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p> <p>○ 유치원 교비에서 유치원 소속 외 직원에게 명절 및 여름 휴가비 500,000원, 설립자의 배우자 소유 개인차량 세금 126,080원, 원장 연구 모임 회비 900,000원, 총 1,526,08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1,526,080원</p>	

□ 기관명 : 군포의왕 애플트리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15,603,680원]

지 적 사 양	처 분 요 구	비 고
<p>□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p> <p>○ 2014~2017년 6월까지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로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8건 296,947,06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국세청 통보</p>	
<p>□ 교비 사적사용</p> <p>○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개인용 물품 구입,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15,603,680원을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경고 원장 1명</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p>보전 15,603,680원</p>	
<p>□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p> <p>○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영어, 체육, 음악 등의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였고, 원아 1인당 1일</p>	<p>경고 원장 1명</p> <p>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p>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1개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원아 1인당 1일 2개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지출 업무 소홀 <input type="radio"/> 2015.3~2017.6까지 설립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여 선결제 후 개인 계좌로 총 48,913,110원을 입금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5학년도 입학금, 방과후 교육비 등의 수납 현금을 교비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않고 무단 보관 후 교비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44,595,000원의 세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input type="checkbox"/> 차입금 운영 부적정 <input type="radio"/> 설립자 또는 원장이 아닌 자(설립자의 배우자)가 6,512,370원의 차입금을 입금, 상환 받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기관명 : 시흥 시흥유치원 [경고 / 보전조치 : 38,012,36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 부적정 <input type="radio"/> 2014~2015학년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구성비율과 2016학년도 운영위원회 총 구성 인원을 법령에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소홀 <input type="radio"/> 2014학년도에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조리보조원(2014.5.1.~7.31)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위탁강사 사업소득 원천징수 미실시 <input type="radio"/> 2014~2017.6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체육, 다문화, 클레이 강사 등의 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input type="radio"/> 2014~2016학년도 유치원 리모델링공사 외 8건을 집행하면서 전문공사업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인지세 및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구, 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교비 부정 사용	경고 원장 1명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교육 목적 외 사용,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9,569,739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보전 9,569,730원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7년 6월까지 문구류, 교재 등의 구입 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367건 1,059,049,81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및 회계집행 부적정 ○ 교직원의 급여 공제금(세금 등)의 일시적 보관 등을 위한 용도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일시적 보관금의 성격이 아닌 입학금, 특성화교육비 등의 수익자부담금을 해당 계좌로 수납 받거나, 유아학비 등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보관하고 집행하면서 현금출납부, 징수결의서, 지출결의서, 과오납반환결의서 등 회계서류 일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담임교사가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28,442,630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결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8,442,630원	

기관명 : 안산 해여림유치원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394,716,220원]

지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교비 부정 사용 ○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교육 목적 외 사용,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84,778,147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84,778,14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시설 미인가 증축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 총 13,200,000원에 해당하는 출입구 부분, 발코니, 창고 등을 불법증축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시설공사 계약시 인지세 미징구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13,200,00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며, 공사 추진 시 설계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 2014~2017년 6월까지 식재료, 교재 등의 구입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311건 331,781,601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7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시 방과후(특성화) 수업을 14:00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실제로는 13:00부터 방과후(특성화) 수업을 실시하여 방과후 교육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 측량비, 등기비 등 총28,847,250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예산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보전 28,847,250원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 수익자부담금을 교비계좌가 아닌 원장 ○○○ 및 교사 ○○○ 개인명의 계좌로 수납하였으며, 이렇게 수납한 수익자부담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총 209,412,791원을 교육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정직1월 원장 1명 정직1월 교사 1명 보전 209,412,790원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보관 통장 운영 부적정 ○ 교직원이나 유치원 명의가 아닌 원장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기사 등 교직원 퇴직금 총 16,493,615원을 임의로 보관 및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차입금 운영 부적정 ○ 설립자 또는 원장이 아닌 자(원장의 배우자)가 14,000,000원의 차입금을 입금, 상환 받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 별도의 이월 절차 없이 총 1,517,490원을 물품 구입 등에 지출하는 등 회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회계집행 부적정 ○ 유치원 운영 및 교육비 등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유치원 교비 거래 카드 및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2014~2017.6까지 총 118,789,346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58,478,040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결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전 58,478,040원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2014.3.3.~2015.1.31 개인차량 소유자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개인 차량 소유주에게 총 13,90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며 통학 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기관명 : 안산 이속숲유치원 [감봉3월(병합) / 보전조치 : 31,974,410원]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input type="checkbox"/> 교비 부정 사용 <input type="checkbox"/> 원장 ○○○ 및 교직원 식사, 교육 목적 외 사용,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31,974,419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31,974,410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시설 미인가 증축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input type="checkbox"/> 총 13,200,000원에 해당하는 출입구 부분, 주차장, 재료실 등을 불법증축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시설공사 계약 시 인지세 미징구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공사 추진 시 설계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input type="checkbox"/> 2014~2017년 6월까지 문구류, 교재 등의 구입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224건 344,478,475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input type="checkbox"/> 급식 운영 부적정 등 <input type="checkbox"/> 2014~2015학년도 급식 검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식재료등을 다수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 및 급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육과정 시간 중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영어 등의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였고, 원아 1인당 1일 1개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원아 1인당 1일 2개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및 회계집행 부적정	경고 원장 1명	

시 적 사 양	계 분 요 구	비 고
○ 2015.3.12. ○○시에서 교부받은 교육경비보조금 총 6,000,000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미편성한 채 현금출납부 작성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경비 부적정 처리 ○ 2015학년도 수업료, 체육복, 앨범구입비 등과, 2016학년도 수업료를 징수권한 없는 직원 ○○○가 교비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않고 무단 보관 후 교비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17,726,000원의 세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27,854,180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결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input type="checkbox"/>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 2015.10.20.~2016.3.31 개인차량 소유자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개인 차량 소유주에게 총 8,278,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며 통학 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